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5013-000001-08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June 2024 Vol.02(통권 4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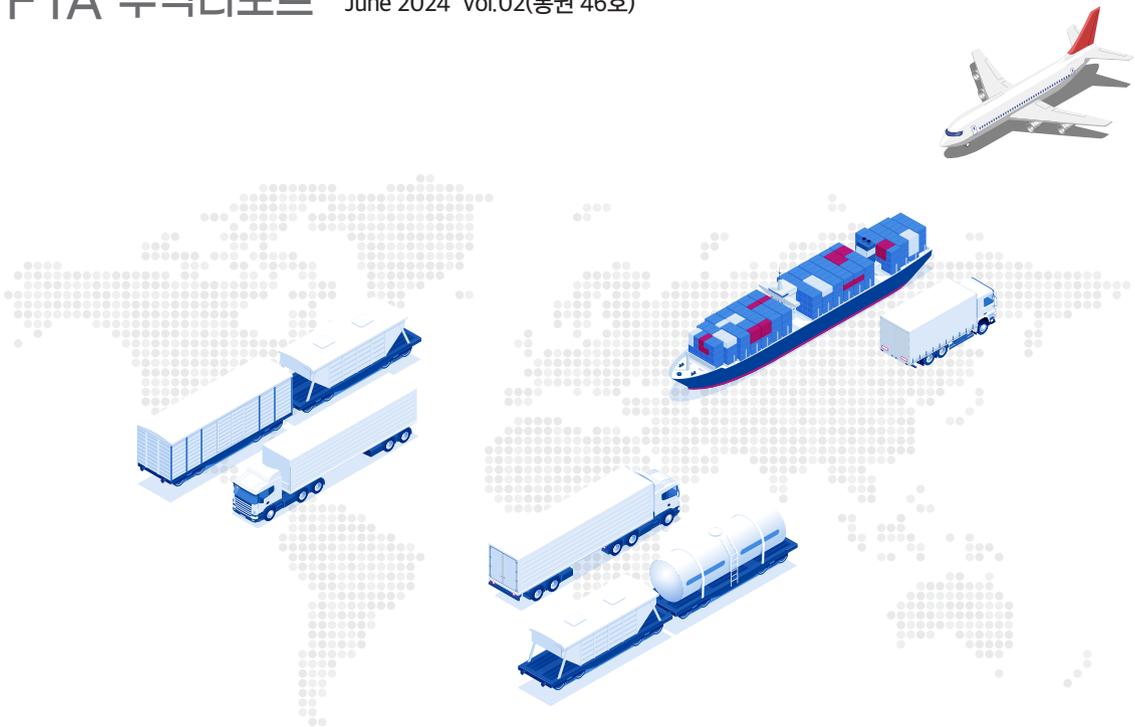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5013-000001-08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June 2024 Vol.02(통권 46호)



CONTENTS

FTA 무역리포트

June 2024 vol. 02 (통권 46호)

FTA 동향

006

FTA EXPERTS

022

USMCA와 한국의 양자 FTA : 농식품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이상현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032

EU의 CBAM 이후 전개과정과 한국무역과의 연계성 연구

김종권 | 신한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부교수



FTA ANALYSIS

042

원산지증명 간소화제도 주요 내용과 2024 신규지정품목 소개

이나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해외 통상 애로

052

베트남 신속통관 체계 불안전, - AEO 제도 활용으로 극복 가능

전웅식 | 관세사,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060

로봇시대 필수 부품 액추에이터 (Actuator)의 품목분류 및 FTA 활용

신승원 | 아신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활용하기 쉬운 FTA-PASS

070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인보이스 작성 신규기능 안내 -

구본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080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한일권 | 부산세관 FTA검증과장, 경남대 겸임교수

FTA 지도

090

주요국의 FTA 체결 및 교역현황

- 미국, 중국, EU 중심으로 -





FTA TRADE REPORT

01

FTA 동향

- ① 언론 뉴스, 사과값 잡으려고…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
- ② 한국무역협회, “K-뷰티 열풍에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 ③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④ 관세청,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돌파… 불닭인기에 올해 11억달러도
- ⑤ 산업부, 한·칠레 FTA 제9차 개선 협상… “자원부국 칠레와 협력 강화”
- ⑥ 산업부, 인도네시아, CPTPP 가입 희망 의사 밝혀… “국내규정과 70% 일치”
- ⑦ 무역위원회, 석화업계 ‘신음’에… 정부,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덤핑 조사 착수
- ⑧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돕는다





- ① 언론 뉴스, 사과값 잡으려고...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
- ② 한국무역협회, “K-뷰티 열풍에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 ③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④ 관세청,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돌파... 불닭인기에 올해 11억달러도
- ⑤ 산업부, 한·칠레 FTA 제9차 개선 협상... “자원부국 칠레와 협력 강화”
- ⑥ 산업부, 인도네시아, CPTPP 가입 희망 의사 밝혀... “국내규정과 70% 일치”
- ⑦ 무역위원회, 석화업계 ‘신음’에... 정부,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덤핑 조사 착수
- ⑧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돕는다

FTA 동향 ①

사과값 잡으려고…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

지난달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바나나와 오렌지도 약 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 국내에 반입됐다. 가격 강세를 보인 사과와 배 등 국내 과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작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8,686 톤으로 1분기 대비 사상 최대의 양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파인애플(HS 0804.30호) 수입량 상위 3개국

단위: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중량	수입증감률	수입중량	수입증감률
	총계	5,727	14.9	8,686	44.7
1	필리핀	5,715	9.8	8,650	51.3
2	베트남	1	-45.0	23	3,074.4
3	태국	11	-2.7	14	20.0

출처: Kita 수출입통계





망고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114.0%의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특히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망고(HS 0804.50-2000호) 수입량 상위 3개국

단위 :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중량	수입증감률	수입중량	수입증감률
	총계	2,851	-28.2	6,010	114.0
1	태국	914	-45.6	5,184	467.4
2	페루	1,735	-13.1	506	-80.9
3	베트남	202	-21.1	320	58.5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은 작년 동월 대비 27.7% 증가한 3만 8404t이다. 수입액은 3813만 4000달러다. 각각 4년 10개월,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바나나(HS 0803호) 수입증감률

단위 : 금액기준 천불 / 중량기준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총계	30,083	-3.5	28,775	2.6	38,404	27.7	38,134	32.5
1	기타	30,083	-3.5	28,775	2.6	38,404	27.7	38,134	32.5
2	플랜틴	0	0.0	0	0.0	0	-100.0	0	0.0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 기타 : HS 0803.90호

* 플랜틴(plantin) : HS 0803.10호

지난달 오렌지 수입량과 수입액은 작년 동월보다 1.7%, 8.5% 각각 증가해 3만 8028t과 8388만 8000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3년 만의 최대였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오렌지(HS 0805.10호) 수입증감률

단위 : 금액기준 천불 / 중량기준 톤

순번	국가명	2023년 (3월)				2024년 (3월)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수입 중량	증감률 (중량)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1	오렌지	37,377	23.1	77,327	17.9	38,028	1.7	83,887	8.5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수입과일이 국내에 많이 들어온 만큼 가격도 하락했다. 16일 농산물유통종합정보 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파인애플 1개(상품) 평균 소매 가격은 6560원으로 지난달 대비 9.9% 내렸고 작년과 비교하면 7.7% 낮은 수준이다.

바나나(상품) 100g의 전날 소매가격도 269원으로 전월보다 17.5%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7% 낮은 것이다.

또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1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0.1% 내렸다. 작년보다는 5.9% 낮다. 망고(상품) 1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3658원으로 전월보다 1.9%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2.9%나 저렴하다.

과일 수요가 분산되자 사과 가격도 최근 하락 추세다. 16일 사과(상품) 10개 평균 가격은 2만5020원으로 지난달 평균 2만9500원보다 약 4000원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작년 4월 1만9000원~2만원대로 형성된 가격보다는 비싼 편이다. 배 가격은 여전히 높다. 배(신고·상품) 10개 가격은 4만7110원으로 전월보다 10.0% 올랐고 작년과 비교하면 73.1%나 높은 수준이다.



“K-뷰티 열풍에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사진 : 한국연합뉴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0% 늘어난 6천 700만달러로 집계돼 1~4월 기준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에는 전동 피부마사지기를 비롯해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등 소형 전기제품이 포함된다. 작년 연간 최대 수출 실적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정 내 미용관리 수요가 늘었고 'K-뷰티' 인기와 함께 기능, 품질을 토대로 수출처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2024년 1~4월 모두 91개국에 수출돼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나라로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46.5%)이다. 이어 일본(16.0%), 홍콩(13.4%), 싱가포르(5.7%) 순이었다.

국가별 수출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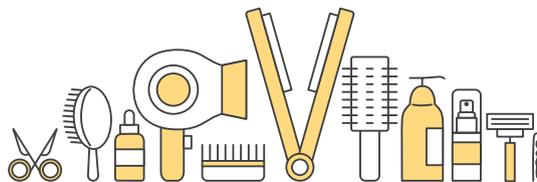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일본	14	115.7	일본	26	85.4	일본	28	11.1
2위	홍콩	12	37.2	중국	18	74.7	홍콩	15	15.5
3위	중국	10	△46.9	홍콩	13	6.4	미국	12	121.1
4위	미국	3	△34.6	미국	5	104.1	중국	9	△50.5
5위	베트남	2	5.8	싱가포르	3	51.0	싱가포르	4	28.0
기타	85개국	19	△9.4	97개국	20	6.8	101개국	22	8.7
	전체	59	△2.9	전체	85	42.5	전체	89	5.3

순위	2023년			2024년 1~4월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미국	27	135.2	미국	31	650.4
2위	일본	22	△23.0	일본	11	51.7
3위	홍콩	21	43.4	홍콩	9	89.8
4위	중국	17	87.3	싱가포르	4	96.2
5위	싱가포르	6	55.3	중국	4	97.1
기타	98개국	22	2.4	86개국	9	14.9
	전체	115	29.0	전체	67	145.0

출처 : 관세청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을 나타냄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처로 부상했다”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 상위국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하였다.

*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써 6자리 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 EU 8단위, 미국 10단위 등)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으로 거래의 관세 추징 혹은 장기간의 물품 통관 지연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본문 (예시)

제1장 | 동력발생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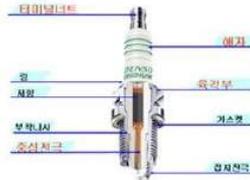


2. SPARK PLUG

HSK 2022	8511.1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806
결정세번	8511.10-9000	시행일자	2015-03-25

1. 물품설명

- ◆ 점화코일로부터 고전압을 받아 실린더 내 연소를 일으키는 점화장치로 엔진 실린더 헤드에 장착됨
- 구성요소 : 하우징, 애자, 중심전극(구리, 니켈), 플러그팁(이리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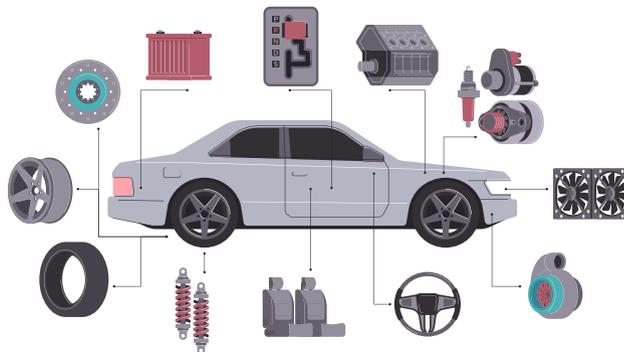


<물품 사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1호의 용어에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발전기와 개폐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 해당 자료를 포함한 표준해석 지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품목 분류(HS) > 품목분류(HS)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TA 동향 ④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돌파... 불닭인기에 올해 11억달러도



사진 : 한국연합뉴스

한국의 라면 수출 금액이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다.

2024년 우리나라 라면(HS 1902.30-1010호) 수출금액기준 상위 5개국

단위 : 금액기준(천불) / 증감률(%)

순번	국가명	2023년 (4월)		2024년 (4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73,951	28.9	108,590	46.8
1	중국	10,115	3.1	21,797	115.5
2	미국	12,625	76.7	16,588	31.4
3	네덜란드	5,306	154.8	8,450	59.2
4	일본	4,774	-7.1	5,646	18.3
5	영국	2,502	49.5	5,170	106.7
...		이하 생략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 증가폭은 24.4%로 커졌다. 올해 1~4월 라면 수출액은 3억7천886만달러(약 5천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34.4% 늘어 수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24년 우리나라 라면(HS 1902.30-1010호) 수출금액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 금액기준(천불) / 중량기준 톤 / 증감률(%)

순번	국가명	2023년(1~12월)				2024년(4월)			
		수출 금액	증감률 (금액)	수출 중량	증감률 (중량)	수출 금액	증감률 (금액)	수출 중량	증감률 (중량)
	총계	952,403	24.4	244,207	13.1	378,857	34.4	94,310	27.5
1	중국	215,449	14.0	62,479	3.2	65,597	9.5	19,443	11.8
2	미국	126,588	66.2	27,181	41.1	63,697	83.0	12,327	51.5
3	네덜란드	60,670	102.1	13,567	81.2	28,078	53.3	6,287	50.1
4	일본	57,970	-4.4	18,924	2.7	22,883	10.8	8,085	26.4
5	말레이시아	44,702	51.4	10,002	39.3	17,253	21.5	3,935	23.3
6	필리핀	36,921	17.8	10,334	9.9	15,942	31.8	4,226	26.5
7	영국	37,594	52.6	7,644	35.6	15,921	39.1	3,242	32.1
8	태국	37,611	21.8	8,933	14.0	14,764	50.0	3,414	45.0
9	호주	35,670	33.4	9,940	27.6	14,024	27.7	3,808	18.9
10	대만	31,667	4.0	9,074	-3.5	11,149	27.5	3,275	24.5
...	이하 생략								

출처 : Kita 수출입통계

같은 기간 라면 수출 중량은 9만4천310t(톤)으로 27.5% 늘었다. K팝 스타들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다. 또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끼 식사로 라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A 동향 ⑤

한·칠레 FTA 제9차 개선 협상... “자원부국 칠레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제9차 공식 협상이 4월 2~4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측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파블로 유리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직무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대면 및 화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돼 20년을 맞았다.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5배로 늘어나면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발전했다.

한국과 칠레 양국은 교역·투자 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하고, 공급망·에너지·원자재·디지털 경제·지식재산권 등 현대화된 통상 규범을 새로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 통상 당국은 올해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이번 9차 협상에서 실질적 협상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정책관은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함께 에너지·광물, 지재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리튬, 구리 등 세계적 자원부국인 칠레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TA 동향 ⑥

인도네시아, CPTPP 가입 희망 의사 밝혀… “국내규정과 70% 일치”

인도네시아가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5월 2일 기준,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해 CPTPP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CPTPP의 30개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기존 규칙과 약 70%가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가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여러 국제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가 더 많이 열리고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FTA로, 한국 정부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또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앤 마리 트레블리안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과 회담 때도 CPTPP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레블리안 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CPTPP와 OECD 가입을 지지하고 이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 선진국 진입 관문의 하나로 꼽히는 OECD 가입을 위한 ‘OECD 가입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 지난 2월부터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이어 3번째 가입국이 될 전망이다.



FTA 동향 ⑦

석화업계 ‘신음’에… 정부,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덤핑 조사 착수



사진 : 여천NCC 당사 홈페이지

정부가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중국산 스티렌모노머(SM)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덤핑 공세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피해를 호소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월 9일 공보에 중국산 SM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다.

무역위의 덤핑 조사는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가 지난달 22일(3월 22일) 중국산 SM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조사 대상에 오른 중국산 SM 수입·제조 업체 4곳에 덤핑 조사 질의서를 발송, 3주 안에 조사 참여 신청서를 무역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국내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중국산 SM 덤핑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질의서 조사에 이어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덤핑 조사는 통상 10~12개월이 소요된다. 무역위의 덤핑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가 겹치며 고전하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충남 대산 SM 공장의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최근 전남 여수 SM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롯데케미칼은 중국 등 일부 해외 법인과 생산 기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FTA 동향 ③

수산물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돕는다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수산물 수출기업을 위한 ‘수산물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물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도 대응한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



FTA TRADE REPORT

02

FTA EXPERTS

- ① USMCA와 한국의 양자 FTA : 농식품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 ② EU의 CBAM이후 전개과정과 한국무역과의 연계성 연구





USMCA와 한국의 양자 FTA : 농식품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이상현 부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 서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협정별, 국가별, 품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들은 여러 국가와의 FTA로 인해 제각각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따라야 하므로 큰 혼란과 부담을 겪게 된다. 이는 'FTA 스파게티볼 현상'으로 불리는데, FTA 활용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FTA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간 및 양자 간 FT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이하 NAFTA)에서 USMCA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로 전환되면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2015년부터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우리 농업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 국제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변화가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 3대 무역협정인 USMCA의 농식품 원산지 규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농식품 수출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USMCA 배경

1994년 체결된 NAFTA는 당시 가장 포괄적인 FTA로 평가받았다. NAFTA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공정 무역,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 비용과 환경 규제 수준이 낮은 멕시코로 미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이전되면서,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재협상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USMCA를 발효시켰다. USMCA는 NAFTA의 현대화, 노동 및 환경 분야 집행 강화,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USMCA는 원산지 규정을 수정하여 역내 공급망과 생산구조의 재편을 도모하였다.

한편, USMCA는 디지털 무역, 환경, 반부패, 경쟁정책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아우르고 있어 21세기형 FTA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chott, 2021). 또



한 자동차 부문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 상향 조정, 노동자 임금 규정 도입 등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역외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특징도 보인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USMCA가 농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무역 촉진,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위생 (SPS) 조치 조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USDA, 2020). 아울러 낙농품, 설탕 등 민감 품목의 관세율 할당 (TRQ)을 유지 또는 확대하여 자국 농업 보호도 강화하였다.

NAFTA는 한-칠레 FTA 등 후속 FTA의 주요 참고 대상이 되었고, USMCA 역시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개별국과의 양자 FTA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USMCA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수립과 FTA 협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USMCA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3. **USMCA 및 한국과 USMCA 회원국간 양자 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 비교**

USMCA, 한-미 FTA, 한-캐 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을 비교한 결과, 이들 협정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모든 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의 무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제품에 대한 미소기준을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협정 당사국 간 무역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품의 원산지 규정은 세 협정 모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6단위 세번변경 후 10%의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점은 협정 간 무역 규범의 조화를 추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재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USMCA와 한-캐 FTA는 원산지 규정에 중간재 흡수원칙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중간재 사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간재 흡수원칙의 유무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USMCA는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불인정 공정 규정의 존재 여부는 특정 공정을 거친 제품의 원산지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를 고려하여 생산 공정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기준 및 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세 협정은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든 협정은 유사한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을 산정하지만, 계산 방법과 일반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USMCA는 공제법을 사용하며 RVC가 60% 이상일 경우 원산지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미 FTA는 공제법과 집적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한-캐 FTA는 공제법만을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협정의 특성과 협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가가치 산정 방식의 차이는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산정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완전생산 정의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산 동물과 육류의 경우, 세 협정 모두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채류의 경우 USMCA는 "grown, cultivate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grown and harvested"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USMCA가 과채류의 완전생산 인정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농산물 교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각 협정의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과채류를 생산, 수확, 가공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소매용 포장재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USMCA와 한-미 FTA는 세번변경 요건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RVC 산정 시에는 포함하는 반면, 한-캐 FTA는 소매용 포장재를 완전히 불포함하고 있다. 이는 포장재의 원산지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협정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각 협정의 규정에 맞추어 포장재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고, 특혜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재료 및 역외가공에 대한 규정 역시 협정 간 차이를 보인다. USMCA는 간접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이를 불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외가공에 대해서는 한-미 FTA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각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간접재료를 사용하고 역외가공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USMCA, 한-미 FTA, 한-캐 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세부 규정과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협정의 고유한 특성과 협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USMCA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





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협정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최적화된 생산 및 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협정 간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able 1 Comparisons on General Rules of Origins – USMCA

구분	USMCA	한-미 FTA	한-캐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누적 - 완전누적 - 유사누적 	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기준 (%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제품 - 섬유제품(중량) - 농수산물 	10% 10% 10%+CTSH ¹⁾ (제1~27류)	10% 7% 10%+CTSH (제1~24류)	10% 10% 10%+CTSH (제1~21류)
• 중간재 흡수원칙	규정	미규정	규정
• 불인정 공정	규정 ²⁾	미규정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 - 수송용 	세번변경요건: 불포함 RVC 산정: 포함 불포함	세번변경요건: 불포함 RVC 산정: 포함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 간접재료	원산지로 인정	불포함	불포함
• 역외가공	미규정	규정	불인정
• 개성공단 특례	미규정	규정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동물 - 육류 - 과채류 	“born and raised” “obtained from a live animal” “grown, cultivate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born and raised” “obtained from a live animal” “grown and harvested”	“born and raised” “obtained from a live animal” “grown and harves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준³⁾ - 계산법⁴⁾ - 기준가격 	60% RVC 공제법 거래가격(TV)	PSR RVC 공제법/집적법 조정가격(AV)	PSR RVC 공제법 거래가격(TV)

1) “Change in Tariff Sub-Heading”의 약자로, HS코드 상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한다.
 2) (2개: 희석, 우회시도)
 3) 협정문 본문에 규정된 일반적 부가가치기준을 의미하며, 부속서 품목별 기준에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기준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품목별 기준이 우선한다.
 4) 모든 협정문의 계산법에 순원가법이 포함되었으나 자동차 분야 적용을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USMCA, 한-미 FTA, 한-캐 FTA의 농식품 분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협정별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제1부에서는 모든 협정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USMCA와 한-미 FTA는 낙농품, 조란, 천연꿀에 대해 미소기준 예외를 두고 있는 반면, 한-캐 FTA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닭고기를 제외한 육과 식용설육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USMCA는 닭고기를 포함한 모든 육과 식용설육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USMCA가 다른 두 협정에 비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USMCA는 일부 특수채소에 대해 미소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공정을 인정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마카다미아 너트와 차류, 후추 등 일부 품목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도 거의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한-미 FTA는 인삼을 제외한 산수목과 꽃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한-캐 FTA와 차이를 보인다.

제3부에서는 USMCA가 다른 두 협정에 비해 보다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USMCA는 양귀비와 아라비아 검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식물성 유지에 대해서는 미소기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캐 FTA는 동·식물성 유지에 대해 2단위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한-미 FTA와 차이를 보인다.





제4부에서는 세 협정 모두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해 주로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USMCA는 코코아 가루와 크랜베리 주스에 대해 추가 조항을 두고 있으며, 낙농품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이러한 추가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한-미 FTA와 한-캐 FTA는 쌀을 포함한 곡물·곡분의 조제품과 빵류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USMCA는 이 품목에 대해 2단위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혼용하고 있다.

USMCA는 한-미 FTA와 한-캐 FTA에 비해 농식품 분야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USMCA는 일부 품목에 대해 미소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 조항을 두는 등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외 규정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한-캐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도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각 협정의 특성과 협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s on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s – USMCA

부류	USMCA	한·미 FTA	한·캐 FTA
제1부			
1. 산 동물	2단위	2단위	2단위
2. 육과 식용설육	2단위	2단위(닭 제외)	2단위(닭 제외)
4. 낙농품·조란·천연	2단위, 미소기준 예외	2단위, 미소기준 예외	2단위, 미소기준 예외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2단위	2단위	2단위 (산 동물 제외)
제2부⁵⁾			
6. 산수목·꽃	2단위	2단위	2단위 (인삼 제외)
7. 채소	2단위, 특수채소 미소기준 적용 일부 공정 인정	2단위	2단위
8. 과일·견과류	2단위, 미소기준 예외 (마카다미아 너트 제외)	2단위	2단위
9. 커피·향신료	2단위 (차류/후추 6단위)	2단위 (후추 6단위)	2단위

5) 비 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하였다.



부류	USMCA	한-미 FTA	한-캐 FTA
10. 곡물	2단위	2단위	2단위
11. 밀가루·전분	2단위, 쌀가루/호밀가루 미소기준 적용	2단위(쌀 제외)	2단위(쌀 제외)
제3부			
12. 채유용 종자·인삼	2단위 (양귀비 예외)	2단위	2단위
13. 식물성 수액	2단위 (아라비아 검 예외)	2단위	2단위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2단위	2단위	2단위
15. 동·식물성 유지	4단위, 미소기준 예외	2단위	2/4단위
제4부			
16. 육·어류 조제품	2단위	2단위	2단위
17. 당류·설탕과자	2/4단위	2/4단위	2/4단위
18. 코코아·초코렛	코코아 가루 - 추가 조항	코코아 가루 - 추가 조항	
19. 곡물·곡분의 조제품과 빵류	2/6단위	2단위 (쌀 제외)	2/4단위 (쌀 제외)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미소기준 예외, 크랜베리 주스 - RVC	크랜베리 주스 - RVC	
21. 기타 조제식료품	낙농품 제외	낙농품 제외	낙농품 제외
22. 음료·주류·식초	주스 - 추가 조항 낙농품 제외	주스 - 추가 조항 낙농품 제외	낙농품 제외
23. 잔재물·조제사료	2/4단위 (사료 예외)	2/4단위 (사료 예외)	2/4단위 (사료 예외)
24. 담배	2단위	2/4단위	2/4단위

4. 시사점

우리나라는 USMCA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USMCA 국가들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해당 국가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SMCA 회원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미국이나 캐나다로 재수출하면, 해당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에서 인정하는 누적 원칙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의 원재료를 통합하여 가공



한 제품을 특혜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USMCA의 경우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어 USMCA 회원국에서 일부 가공된 제품을 한국에서 추가 가공 후 재수출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수입 시 USMCA의 원산지 규정 변화에 따른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수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가공 공정이나 원재료의 비율에 변화를 줌으로써 더 많은 제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 전략도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USMCA와 한-미 FTA, 한-캐나다 FTA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제품별로 가장 유리한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USMCA 회원국들의 원재료 수요와 공급 현황, 그리고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수입 특혜 혜택을 조사하고, 원재료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성, 품질 및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USMCA 국가들에 대한 농식품 수출전략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의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공급업체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들의 시장 특성과 소비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농식품 수출 기업들에게 USMCA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수입 및 가공 후 재수출과 관련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USMCA 협정의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유연한 수출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본 고를 통해 USMCA와 한-미 FTA,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양자 FTA 협상 시 이를 반영하여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향후 양자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자국의 농식품 산업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의 내용을 조정해야 하며, 양자 FTA의 원산지 규정 개선을 위해 협정 참여 국가의 농식품 산업 특성, 시장 규모, 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양자 FTA의 원산지 규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의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규정처럼, 국내 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선하면서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 FTA의 원산지 규정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서의 원산지 인증 절차나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작은 규모의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농식품의 비교우위와 협정 간 원산지 규정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외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수출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양자 FTA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 외에도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기술 장벽이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련 규정 등에도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 표준 및 규정, 기술 및 연구 개발,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USMCA와 같은 메가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 변화가 글로벌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메가 FTA의 확산은 세계 농식품 교역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전략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USMCA와 같은 메가 FTA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들의 농식품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U의 CBAM이후 전개과정과 한국무역과의 연계성 연구



김종권 부교수
신한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I . 도입

EU의 의회를 통하여 2024년 4월 24일(현지시간의 기준) 들어 공급망실사법에 해당하는 CSDDD¹⁾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Corporate)의 지속가능성으로의 환경과 인권에 대한 ESG경영 준수와 관련된 지령이다. EU의 친환경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2050년까지 방향을 의미하는 그린딜방안과 연결되어 있다. EU는 이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어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해당하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하여 저탄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CSDDD의 경우 시행시기가 2027년 정도로 역외의 기업들이 EU지역 수출에서 4억5천만 유로 초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EU지역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부담요인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EU의 CBAM은 2024년 1월 이후 분기별(quarterly)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CBAM은 알루미늄과 철강의 2차적인 가공물품을 비롯하여 수소와 알루미늄 및 철강 그리고 전기와 시멘트 등이 대상이다. CSDDD의 경우 한국의 EU 무역기업들 중 상당한 대기업들과 EU 공급망과 관련된 거래상의 중소기업들까지 의무 대상이다. CBAM에 있어서도 EU지역에 대하여 무역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EU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배출량기준 강화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EU의 CBAM은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확정 기간으로 되어 있다. CBAM과 관련하여서는 EU와 무역을 진행 중인 세계 모든 국가들에 해당되어 이들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방안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철강제품들이 제일 민감한 품목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EU지역에 대한 철강제품 수출이 2026년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모든 EU지역에 탄소감축을 하여야 하는 철강제품들을 비롯한 해당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이 부정적인 효과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의 CBAM이후 전개과정과 한국무역과의 연계성 연구를 하기로 한다.

1) EU의 '공급망 실사법'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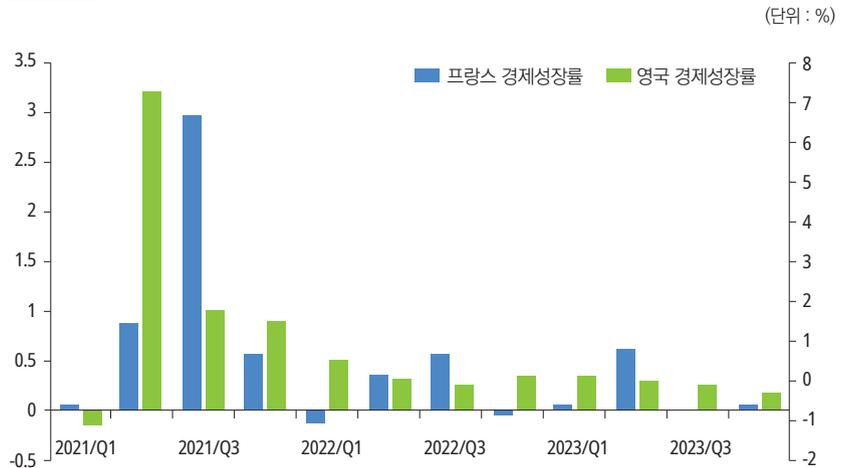


II. CBAM, CSDDD 및 CCA와 한국무역

EU 뿐 아니라 영국도 2027년 이후 CBAM을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당 품목들은 시멘트를 비롯하여 유리와 세라믹 및 수소와 비료 그리고 알루미늄과 철강 등이 대상이다.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EU 뿐 아니라 미국의 청정경쟁법으로 알려져 있는 CCA²⁾도 있어서 이와 관련된 대비책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CCA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 제지와 유리를 비롯한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및 정유 등 12개의 품목들이 대상이다. EU의 CBAM과 미국 CCA 모두 향후 품목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EU와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 수출할 때 관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재정확충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림 II-1〉에는 EU 중 프랑스와 영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단위 : %)이 나타나 있다. EU의 대표적인 국가 중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21년 3분기 2.98%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추세에 놓여 있으며 영국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도 2021년 2분기 7.33%를 보인 이후 하향 안정추세를 갖고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 부문에 있어서 최근 중국의 태양광패널산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의 EU지역에 대한 수출증가 비롯한 가격경쟁력의 열위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모멘텀으로 인한 재정확충도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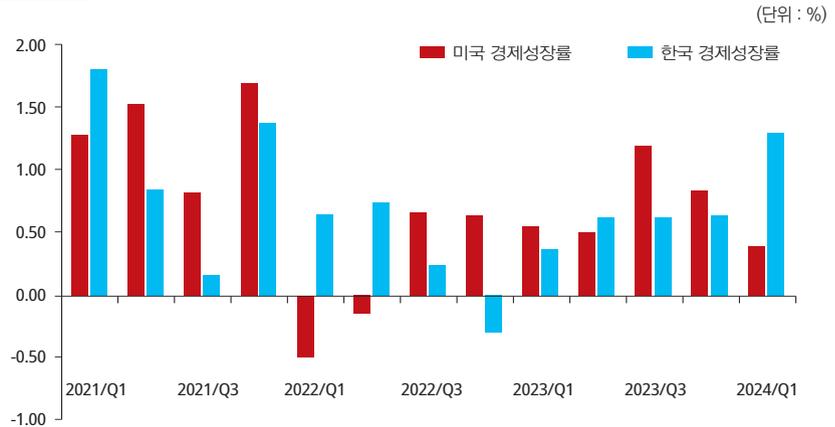
그림 II-1 EU 중 프랑스와 영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



출처: 2024년 한국은행

2)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을 칭한다.

그림 II-2 미국과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



출처: 2024년 한국은행

〈그림 II-2〉는 미국과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분기별, 평균)(단위 : %)이 나타나 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경기의 수출여건의 회복에 의하여 2024년 1분기 1.28%로 반등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2023년 3분기 1.19%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2024년 1분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U의 CSDDD에서는 환경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EU의 역내기업들에 대하여는 세계 순매출규모 4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들과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1천명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시행시점으로는 순매출규모로 15억 유로 초과의 경우 빠르면 2027년 시점 그리고 순매출규모 9억 유로 초과의 경우 빠르면 2028년 시점, 순매출규모로 4억5천만 유로를 초과와 9억 유로 이하의 경우 빠르면 2029년 시점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청정경쟁법은 향후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 등의 완제품을 대상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 EU의 CBAM과의 차이점으로는 온실가스관련 미국의 산업내 평균치의 배출집약도와 미국이 수입하는 국가들의 배출집약도 간에 차이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톤당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55달러에 이르는 부과 내용이 있으며 관세액과 관련하여 2025년에 55달러이지만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이러한 EU CBAM과 CSDDD, 미국의 CCA 등이 등장한 배경에는 이들 국가들의 일자리창출 확대와 함께 관세 또는 벌금 부과 등에 따른 재정확대 및 중국의 신재생에너지관련 태양광산업과 배터리분야와 전기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양상은 EU와 미국 모두 철강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제품들을 견제해 나가고 있다. 한국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 철강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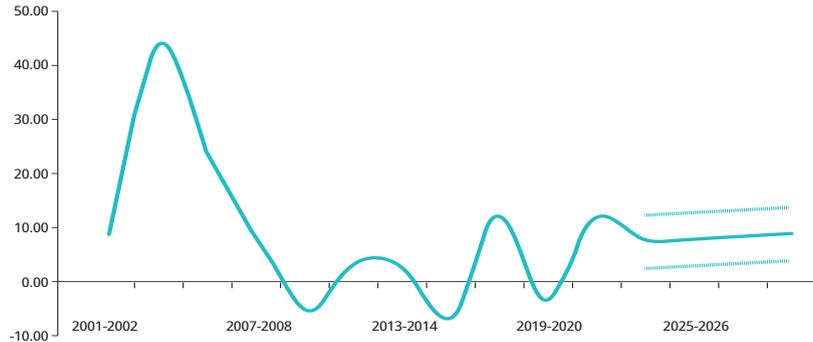




우 중국산 및 인도산과 함께 EU를 비롯하여 견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림 II-3 연도별 한국의 EU 수출증감률(평균)

(단위 : %)



<그림 II-3>은 연도별 한국의 EU 수출증감률(평균)(단위 : %)이 제시되어 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이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직접 ARIMA모형에 근거를 둔 추정치에 해당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외부적인 효과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시 한국의 EU 수출증감률은 2030까지 안정적인 증가 방향의 추세(trend)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ARIMA모형에 따른 통계적 추정방법론의 경우 (1, 1, 0)에 해당하며 ARMA(k,s)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z_j 와 관련하여서 전개할 때 $z_j = \beta_1 y_{j-1} + \beta_2 y_{j-2} + \dots + \beta_k y_{j-k} + \gamma_j - \rho_1 \omega_{j-1} - \rho_2 \omega_{j-2} - \rho_3 \omega_{j-3} - \dots - \rho_s \omega_{j-s}$ 이다. 임의변수인 z 와 관련해 하첨자인 j 는 시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1, 1, 0)에서 가운데의 1은 차분차수임을 나타낸다. MA로부터 가역성의 조건이 성립하고 AR로부터 안정성요건을 갖출 경우 z_j 변수가 가역성의 조건과 안정성의 요건 모두 갖추게 된다.

그림 II-4 한국 철강재의 수출증감률(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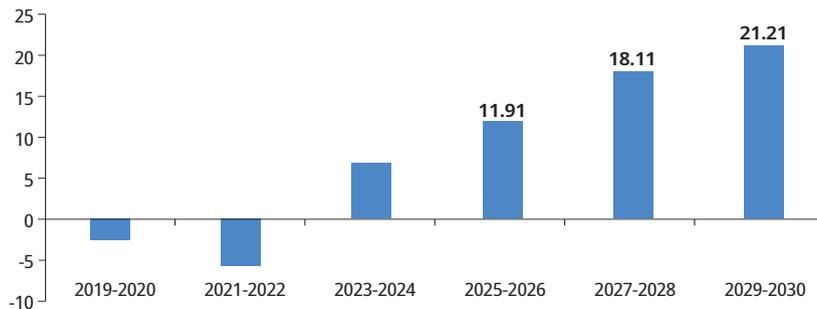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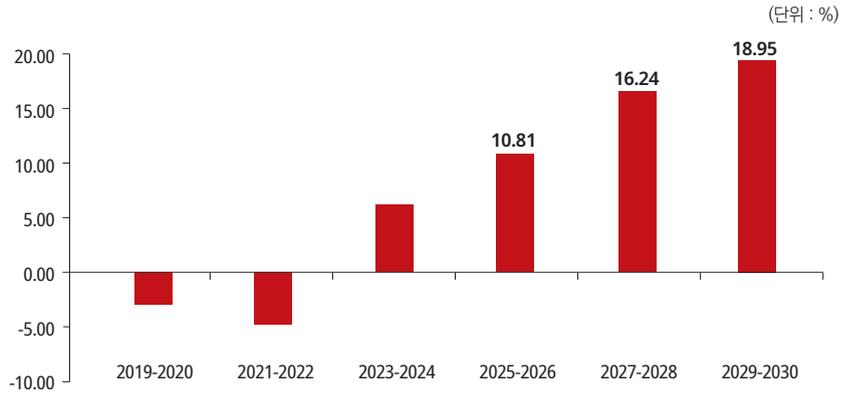


그림 II-5 한국 전철강의 수출증감률(평균)



〈그림 II-4〉는 한국 철강재의 수출증감률(평균)(단위 : %)과 〈그림 II-5〉는 한국 전철강의 수출증감률(평균)(단위 : %)이다. 2019년부터 2024년 1월과 2월까지의 자료는 World Steel Association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며 이후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1, 1, 0)의 ARIMA모형에 따른 각각 직접 통계적 추정방법론을 적용시켜 나타난 추정치들이다. EU와 미국 등의 견제로 인한 중국산의 철강재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국내환경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발효되는 변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시에 철강재와 전철강의 모두에서 2030년까지 증가 추세(trend)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림 II-4〉에서 철강재의 경우 한국 철강재의 수출이 2030년까지 21.21%(평균)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림 II-5〉에서 한국 전철강의 수출이 18.9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지 2024년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1월과 2월까지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2024년 3월 이후의 수치 변동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III. 한국무역에 대한 시사점과 대처방안

RCEP과 IPEF를 통하여 중국과 인도 등과 함께 EU의 CBAM에 대한 철강을 비롯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적 모색을 해 나갈 수 있다. 인도의 입장은 시멘트와 철광석 및 철강에 대하여 27.5%의 평균 관세율이 부과되는 EU의 CBAM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에 근간을 둔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도의 중소 수출업자들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도의 철강업체들도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산업보호 명분으로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인도는 알루미늄과 철광석 및 철강에 대한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EU의 CBAM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BAM에 의하여 역내기업들이 역외기업들에 대한 데이터의 접근허용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원리에 위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BAM에 대한 위반 시의 벌금에 있어서의 상한도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중국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측면이다. 기밀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EU역외의 제조 기업들의 제품에 있어서 공정과 원재료의 비율과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EU의 FTA를 근간으로 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CBAM이 EU의 재정적인 수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EU의 산업보호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EU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와 공동 연구 및 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 이미 제도적인 정착이 되어 있으므로 CBAM에 대한 제출과 관련하여 국내기준이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과 EU 간의 FTA를 통한 협상 강화로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저탄소 관련하여 운송연료와 건물에너지의 난방과 관련하여 3년 후부터 적용됨으로 대비책도 될 수 있다.

IPEF를 통하여 미국과 같이 탄소저장기술을 비롯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리고 일본과 같이 이들 기술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탄소중립 기술의 강화라는 면에서 필요하다. 이는 향후 각국들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외적인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유용하다. 일본은 향후 고부가가치의 생산 공정설비 도입 기업들과 탈탄소화를 도입한 기업들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통하여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화작업도 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강화가 상호 국가들에 이익 가능성이 있다.

EU의 CSDDD 경우에도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EU지역에 대하여 수출하는 한국 기업체들이 보다 강화된 환경과 인권 등에 대하여 준비해 나가야 한다. EU의 경우 ESG경영에 중요 요소인 지배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개선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의미한다. 특히 EU의 CSDDD 경우에도 저렴한 중국산에 대한 공급망의 체계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살펴 보면서 한국과 EU의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 협력업체 선정 시 한국기업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병행도 필요하다.

미국의 CCA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 전통적인 탄소배출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품목 수에서는 EU의 CBAM보다 1.7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물론 EU의 CBAM과 미국의 CCA 모두 품목이 확대될 수는 있다. 한국의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 등 중에서 주요 완제품인 자동차와 전자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기업들에 부담요인이 클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비롯하여 IPEF 참가국이므로 이와 같은 협력측면에 있어서 한국 수출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부담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23년에 환경기준의 강화를 필요로 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체와 관련된 혜택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미국산의 제품에 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 과다의 해외 제품들에 대하여 해외오염관세 부과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법안도 결국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국 내의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있다. EU의 CBAM에서와 마찬가지로 철강업체들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2년 후부터는 전기로의 신설로 용강을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방식을 포함한 저탄소배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EU와 미국을 비롯하여 친환경관련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무역을 하고 있는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과 함께 기존의 FTA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현재의 FTA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하여 FTA체결국들을 포함하여 EU와 미국 등의 기업체들과의 기술협력과 공동대응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EU와 미국 현지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비교적 EU CBAM과 CSDDD, 미국의 CCA 등에 대하여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무역 기업들의 로드맵 설정과 노력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법안들이 준비되고 일자리 창출노력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의 체계와 산업보호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FTA TRADE REPORT

03

FTA ANALYSIS

원산지증명 간소화제도 주요 내용과 2024 신규지정품목 소개





원산지증명 간소화제도 주요 내용과 2024 신규지정품목 소개



이나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1.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요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부터 복잡한 원산지증명 절차 및 방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등의 문제는 FTA 활용 조기장착을 위해 주요한 해결 과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시 다수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어려움은 FTA 활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세청은 FTA 활용이 저조한 산업 및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지원을 위해 품목의 특성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지위를 쉽게 획득하고 확인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2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먼저 2015년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수매확인서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한 국내 생산·인증·거래사실 관련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인정하여, 원산지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정부기관 발급 서류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공급시 한국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포괄)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더불어 2017년 주력 수출 품목인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세번변경기준 특성을 이용하여 도입한 제도로 모든 투입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이 상이하여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충족하는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제출 원산지증빙





서류를 「국내제조(포괄)확인서」1종으로 같음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2. 주요내용 및 연혁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는 2015년 관세청 고시 제정을 통해 농산물 1,028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등 5종의 정부기관 발급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인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 후 대상 품목 및 인정서류를 지속 발굴·지정하여 2022년 1,200개 품목대상 18개 인정서류로 확대되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품목 및 인정서류 지정 현황

제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지정 품목	1,028개	1,113개	1,145개	1,146개	1,193개	1,200개	1,225개
신규 지정 품목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통 식품	-	지역 특 산물	-	재활용 공산품
인정 서류	5종	13종	14종	14종	16종	18종	19종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체 인정서류 19종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⑪ 출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⑫ 출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③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⑤ 물김 수매확인서	⑮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⑯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⑧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증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⑲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최근 2023년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산업의 25개 물품과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가 추가 지정되어 현재 1,225개 대상 품목에 대하여 19종의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인정되고 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이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 간편인정으로 추가된 우수재활용 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등 총 25개 품목이다.

우수재활용제품(GR) 지정품목 25개

연번	분야	품목명	품질인증 기준번호	HS번호
1	폐식용류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GR M 2002	3402.50
2	폐유	정제연료유	GR M 2102	2710.12/ 2710.19
3	폐플라스틱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GR M 3086	2916.14
4	폐요업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1	6801.00/ 6802.00
5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GR F 4042	2619.00/ 2517.20
6	폐고무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GR M 6001	4012.90
7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20	3915.90
8		재활용 타이어 분말	GR M 6021	4004.00
9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GR M 6024	4004.00



연번	분야	품목명	품질인증 기준번호	HS번호
10	수산물가공 잔재물	패화석 비료	GR M 9005	0508.00/ 2825.90
11		공업용 탄산칼슘	GR M 9015	2836.50
12		패분	GR M 9016	0508.00/ 2825.90
13	유기성 폐기물	부산물 비료(퇴비)	GR M 9001	3101.00
14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GR M 9006	2309.90
15		사료용 어분	GR M 9008	2301.20
16		사료용 육골분	GR M 9010	0506.90
17		육분	GR M 9011	2301.10
18		혈분	GR M 9012	0511.99
19		사료용 유지	GR M 9017	1518.00
20	폐금속	페알루미늄캔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GR D 0004	7601.20
21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GR D 0007	2818.20
22	폐금속	재활용 인듐	GR D 0008	8112.92
23		재활용 주석	GR D 0009	8001.10
24		재활용 코발트	GR D 0010	8105.20
25		재활용 구리	GR D 0011	7403.19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통해 농수축산물은 지속적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으로 원산지증명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주력 수출산업 및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지원은 미미하였으며,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어려움은 FTA 활용기업 애로로 지속 작용하였다.

이에 2017년 관세청 고시를 개정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중 국내제조사실만으로 한국산 원산지지위가 충족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물품 사례

주요 원재료		HS 코드	최종 제품
고무	천연고무	400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코드 : 제4011.10호 • 한-중 FTA PS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원재료의 4단위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제조시 원산지 충족
	합성고무(SBR)	4002.11 4002.19	
고무배합약품	카본블랙(착색 등)	2803.00	
	프로세스 오일	2710.19	
	고무 노화방지제	3812.30	
	유황(가루제)	2503.00	
강력사 타이어 코드 직물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제의 것	5902.1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5902.2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5902.90	
스틸 코드	스테인리스강의 선 (황동 도금)	7223.00	
	철강제 코드	7312.10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은 관세청 고시상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다. 동제도 도입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최대 13종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2017년 첨부서류 종류가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등 2종으로 축소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2022년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C/O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혜택

일반 수출물품 C/O 발급방식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대상물품 C/O 발급방식	
	2017년~2021년	2022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최대 12종* 등 * 제조공정도, BOM, 원재료 수불부 등 최대 1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제조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 (좌동) - 원산지소명서 1부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부 등 2종으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좌동) - 원산지소명서 제출생략, 국내제조 확인서 1종만 제출

* 관세제도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의2

더불어 보다 폭넓은 산업(품목)에 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이 공여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2017년 최초 161개 품목을 지정하여 제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총 326개(HS 10단위 기준)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 품목 지정 현황

(단위 : 품목수)

구분	2017년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지정 품목수	161	+82	+50	+24	+9	326

2024년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신규 지정품목

연번	HS 코드	HSK 품명	활용대상협정
1	2206.00-2010	청주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2	2206.00-2030	탁주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3	2209.00-1000	양조 식초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연번	HS 코드	HSK 품명	활용대상협정
4	2523.21-0000	백색 시멘트 (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5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 와 유사한 것으로 직 조한 직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6	5801.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 (corduroy)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7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8	6109.90-3010	인조섬유 티셔츠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9	6307.90-4020	보건용 마스크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3. 향후제도 확장가능성

관세청은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2종을 통해 FTA 활용 저조산업 및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애로를 경감시키고, FTA 활용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중고차 부품 수출시장 규모 확대 및 전기차 산업의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 재사용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고품, 재사용, 재제조 물품의 원산지 간소화 제도 편입 및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





FTA TRADE REPORT

04

해외 통상 애로

베트남 신속통관 체계 불안전,
- AEO 제도 활용으로 극복 가능





베트남 신속통관 체계 불안전, - AEO 제도 활용으로 극복 가능



전웅식 관세사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1. 베트남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무역안전성이 공인된 기업에 통관 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베트남 「관세법」에서는 “우선기업(DNUT; Doanh Nghiep Uu Tien)”이란 제도로 법제화하여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 총 75개 기업이 AEO 공인을 받았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은 15개 기업이 공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4/2014/QH13 Chapter III Section 2)

2. 베트남 AEO 제도 특혜

베트남 세관은 통관 물품을 위험도에 따라 Green·Yellow·Red 채널로 분류하고 Yellow·Red 채널로 분류되는 경우 세관 검사를 실시한다. 현지 통관 환경상 베트남은 아직 신속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관 검사 대상에까지 선별되면 납품 기한이나 생산 일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세안 국가 평균 수입소요 시간(2019년)

(단위: 시간)

구분	국가명	수입 소요시간 (통관검사)	수입 소요시간 (서류처리)	수입 소요시간 합계
지역	아시아 태평양	68.4	53.7	122.1
국가	대한민국	6	1	7
	싱가폴	33	3	36
	말레이시아	36	7	43
	태국	50	4	54
	라오스	11	60	71
	베트남	56	76	132
	캄보디아	8	132	140
	브루나이	48	132	180
	인도네시아	99	106	205
	필리핀	120	96	216
미얀마	230	48	278	

자료 : 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AEO 제도 활용 가이드



이 경우, AEO 제도를 활용하면 세관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등 통관 절차상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되어 베트남 통관 지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AEO 기업은 세관 사후 통관 검사(세관 심사) 면제·축소, 전문 품질검사(수입 요건 검사) 우대, 세무 절차 혜택 등 기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베트남 AEO제도 특혜

- ① (통관검사) 법 위반징후·무작위 검사 외에 통관 검사 면제 혜택 제공
- ② (서류제출) 세관 전산 장애 시 간소화된 서류 제출로 통관이행 가능
- ③ (우선통관) 통관 절차 이행 및 통관 이슈 사항 발생 시 우선권 부여
- ④ (세무절차) 세금 우선 환급 및 납부 기한 유예 혜택 제공
- ⑤ (품질검사) 전문 품질검사 (수입요건검사 개념) 절차적 혜택 부여
- ⑥ (내국수출입*) 물품 선 인도 후 30일내 세관 사후 신고 가능 혜택
- ⑦ (사후심사) 사후 통관 심사(세관 심사 개념) 면제 혜택 부여

* 내국수출입제도 : 거래 물품이 베트남 국내간 이동할 때도 일정한 경우 이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제도

3. 베트남 AEO 공인기준과 공인분야

베트남 AEO 공인기준은 관세법령 준수요건, 수출입거래액 요건 등 6가지 기준으로 규정 되어있다. 공인분야는 ①수출입기업(“우선기업”), ②통관 대리인(“우선 대리인”), ③핵심 투자사업(“우선 사업”)이고 공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 AEO 제도 대비 공인 분야가 적고 공인 유효기간이 짧다.¹⁾

☑ 베트남 AEO 제도 공인기준

- ① (법규준수) 최근 2년 연속 탈세·미수, 법 위반, 체납 등 없을 것
- ② (수출입금액) 최근 2년 연속 수출입금액 연간 1억불 등 일정 기준 이상
- ③ (전산환경) 기업 수출입활동을 관리하는 정보 기술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 ④ (대금결제) 수출입 및 운송 비용은 은행을 통해 결제할 것 등
- ⑤ (내부통제) 기업 활동 관리 및 무역 안전을 위한 내부 통제 수단 보유할 것
- ⑥ (회계기준) 베트남 재무부 규정에 따른 회계 기준 및 감사요건 충족

1) 우리나라 AEO제도의 공인분야는 수출입업체 등 총 9가지 분야이며, 공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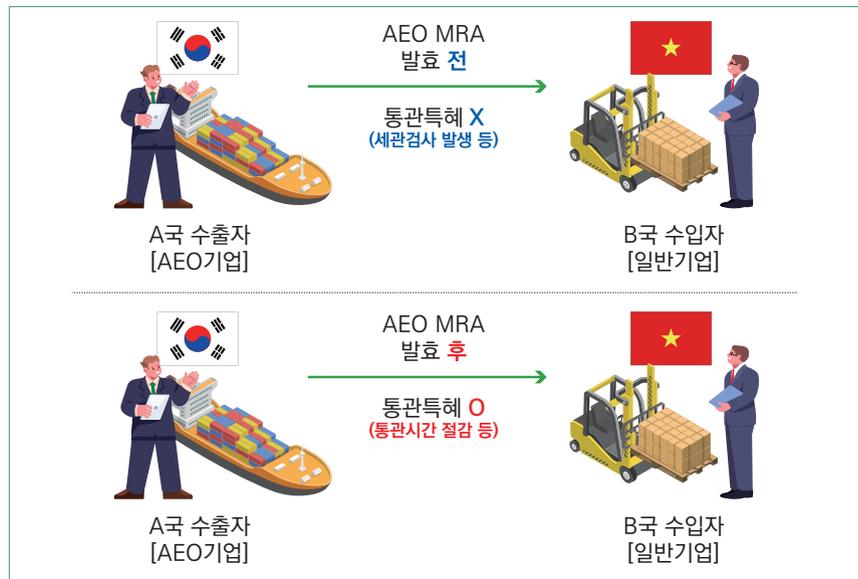
4. 베트남 AEO 제도 활용 한계와 한-베 AEO MRA 추진

베트남 AEO 제도의 공인 기준 중 특히 ‘수출입 거래액’ 조건 때문에 베트남 현지 에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AEO 공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AEO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베 양국간 ‘AEO MRA’가 시행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AEO 제도 특혜를 활용할 수 있다.

AEO MRA(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관세 당국 간 협정에 따라 AEO 공인기업이 상대국에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세관 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AEO MRA가 시행되면, 베트남 수입자가 AEO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수출자가 AEO 기업이라면 베트남에서도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어 AEO 제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AEO MRA 체결 시 효과



자료: 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AEO 제도 활용 가이드

베트남은 아직 AEO MRA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아세안 국가와는 2023년 9월 AEO MRA 서명이 완료되어 24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AEO MRA 추진을 위해 관련 국내 법규를 개정 중이다.

* 1차 시범 이행 : 2023년 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6개국 이 국내 행정절차 마무리 후 시범 시행 예정. 해당 국가들은 2024년 3분기 내 정식 시행 목표

*2차 시범 이행 : 2024년 내로 나머지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차 시범 시행 예정



한국과는 AEO MRA 추진 협의를 포함하는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개정의정서”)」가 2023년 9월 1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올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한-베 양국간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을 위한 AEO MRA 체결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양국 관세 당국 간 AEO MRA 체결에 대해 협의 중인 단계이다.

한국과 베트남 AEO제도 비교

(2024년 2월 기준)

구분	한국	베트남
법정명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우선기업(Doanh nghiệp uu tien)
공인기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한국 AEO 협회(위탁)	관세총국 사후통관심사국 세관국 사후통관심사지국
시행연도	2009년	2013년
공인기업	916개	75개
공인분야	9개 분야	3개 분야
공인등급	A, AA, AAA	등급구분 없음
유효기간	5년	3년
공인갱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	유효기간 만료 전 공인 재평가
공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준수도 - 내부통제 시스템 - 재무 건전성 - 안전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준수도 - 수출입금액 - 전자 프로그램 보유 - 은행 통한 결제 - 내부통제 시스템 - 회계 및 감사요건
공인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비율 축소 등 신속 통관 - 세관 심사 제외 혜택 - 수정 수입 계산서, 월별 납부 등 - 과태료, 통고처분금액 경감 등 - 자율보세공장, 보세운송특례 등 - 임원 여행자검사 선별 제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검사 및 실물 검사 면제 - 세관 서류 사후 제출 혜택 - 통관 절차 우선권 혜택 - 세무 절차 우선권 부여 - 전문품질검사제도 관련 우대 - 내국수출입제도 관련 우대 - 사후 통관 심사 면제 혜택
공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심사(선택) - 서류심사(60일) - 현장심사(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기업상의(선택) - 서류심사(5일) - 현장심사(최대 5일/현장심사 기간)
사후관리 (기업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교육 - AEO 공인 변동 사항 보고 - AEO 공인 기준 정기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회계 및 재무 보고 이행 - 세관검사 및 감사 관련 규정 이행 - 관련기관의 세무·회계법을 위반 결정 발행 시 세관 당국 통보
AEO MRA	AEO MRA 체결 협의 중	

자료: 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AEO 제도 활용 가이드

5. 시사점

베트남 관세 당국은 전자 통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매년 통관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신속 통관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아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베트남 통관 환경에서 AEO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 지체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베트남 AEO 제도는 까다로운 공인 조건(특히, 수출입금액 기준), 짧은 유효기간과 이에 따른 잦은 갱신심사의 부담이라는 한계점도 있으나, 베트남 관세 당국은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AEO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한-베 양국 간 AEO MRA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AEO 제도의 활용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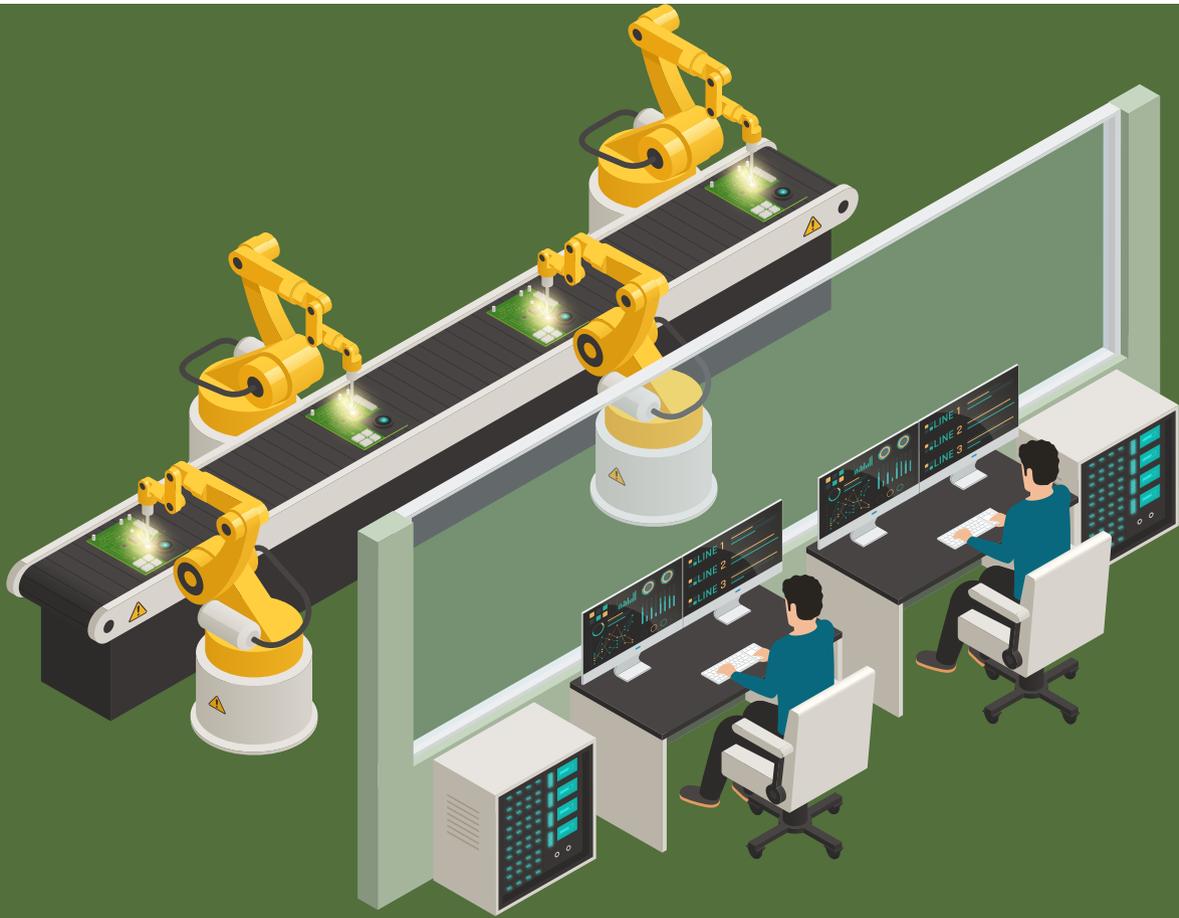
FTA TRADE REPORT

05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로봇시대 필수 부품 액추에이터(Actuator)의
품목분류 및 FTA 활용





로봇시대 필수 부품 액추에이터 (Actuator)의 품목분류 및 FTA 활용



신승원
아신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개요

지난 4월 보스톤다이내믹스는 전기식 액츄에이터를 탑재한 2족 보행 로봇을 공개함으로써 웨어러블 로봇 형태 시스템의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또한, 전자부품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미래자동화 솔루션을 위한 주요 원재료로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액츄에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그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액츄에이터(actuator)¹⁾는 시스템을 움직이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 장치이다. 즉, 전기나 유압 또는 압축 공기 등을 이용하는 원동 구동장치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전류, 작동유압, 기력압 형태로 된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며 이 에너지를 어떠한 종류의 움직임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액츄에이터는 로봇에서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는 근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힘과 세밀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액츄에이터를 필요로 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액츄에이터 종류와 품목분류 및 주요 수출국 현황을 살펴보고 FTA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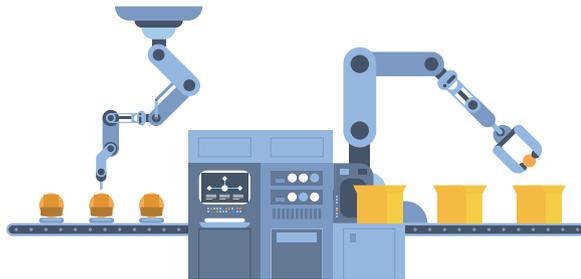
2. 액츄에이터 품목분류

액츄에이터는 전기, 유압, 공압 등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유압식과 전기식의 특징 및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유압식 액츄에이터

㉠ 정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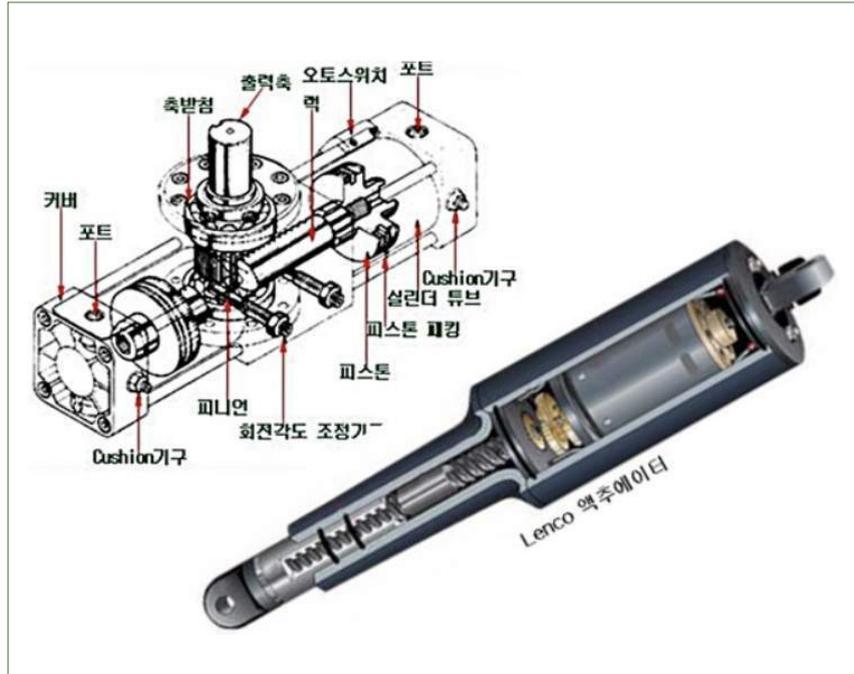
유압식 액츄에이터는 압축된 유체를 이용해 피스톤을 움직여 작동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구성 요소에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중대형 산업 응용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1) 위키백과 사전



유압식 액추에이터



자료출처 : 한국공학

㉠ 유압식 액추에이터 품목분류

품목번호 (HSK)	품명		
	국문	영문	
	그 밖의 엔진과 모터	Other engines and motors.	
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 :	
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Linear acting (cylinders)	
8412	1000	액압실린더	Hydraulic cylinder
	9000	기타	Other
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Pneumatic power engines and motors :	
31	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Linear acting (cylinders)	
39	0000 기타	Other	

나. 전기식 액츄에이터

㉠ 정의 및 특징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토크로 변환하여 작동함으로써 정밀한 제어와 높은 정확도를 특징으로 한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속도, 힘, 위치를 맞춤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반면 초기 비용이 높으며 매우 높은 힘이 요구되는 환경이나 높은 하중 용량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단점이다.

전기식 액츄에이터



자료출처 : 한국공학

㉡ 전기식 액츄에이터 품목분류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 제외)”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를 말하며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501호 해설서에서 “모터와 함께 결합된 기어·기어박스나 샤프트 등을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주기계에 종속되는 부속기기(예:압력계·온도계·스위치·컨트롤 패널 등)는 주기계와 함께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어 전기식 액츄에이터는 그 출력에 따라 8501호에 분류되며 어셈블리(ASSEMBLY) 또한 함께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3. 액츄에이터 수출입 동향

가. 최근 3년간 수출입 거래 현황(금액기준)

㉠ 유압식 액츄에이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압식 액츄에이터 수출입 금액은 2021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천불)

HS CODE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8412.39	19,177	49,682	22,181	54,819	26,786	56,493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 전기식 액츄에이터

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식 액츄에이터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정 수준의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거래현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단위 :천불)

HS CODE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8501.20	1,892	8,689	1,692	10,881	1,565	6,852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나.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유압식 액츄에이터

유압식 액츄에이터의 경우 수출상위 10개국 모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해당되고 있어 액츄에이터를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FTA 활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 :천불)

순위	국가명	2022년			2023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1	미국	9,683	17,171	-7,488	9,743	17,867	-8,124
2	일본	1,569	21,603	-20,035	2,808	20,301	-17,493
3	폴란드	1,111	960	151	2,106	864	1,242
4	독일	455	2,762	-2,308	1,673	3,115	-1,442
5	베트남	1,036	0	1,035	1,090	7	1,083
6	중국	1,717	3,538	-1,821	1,070	5,230	-4,160
7	영국	496	377	119	937	38	899
8	프랑스	461	94	366	643	671	-28
9	태국	1,137	1	1,135	600	0	600
10	오스트리아	4	21	-18	585	14	571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 전기식 액츄에이터

8501.20호 전기식 액츄에이터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위주로 수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를 활용하는 경우 수출경쟁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천불)

순위	국가명	2022년			2023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1	남아공	12	0	12	315	0	315
2	미국	176	953	-778	155	686	-531



3	일본	111	574	-463	145	101	44
4	영국	117	414	-297	116	74	42
5	중국	160	7,068	-6,908	112	4,545	-4,433
6	필리핀	219	0	218	102	0	102
7	베트남	264	191	72	84	306	-222
8	요르단	0	0	0	64	0	64
9	태국	65	16	48	46	12	34
10	인도	21	17	3	37	14	23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4. 엑츄에이터 수출시 FTA 활용방안

유압식 엑츄에이터의 경우 상위 10개국 모두 FTA 체결국으로써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외 전기식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FTA 미활용 업체의 경우 향후 수출거래분에 대해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나아가 인증수출자 인증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가. 유압식 엑츄에이터 FTA 활용실익 (수출금액 상위 국가 위주)

유압식 엑츄에이터를 중국 또는 영국 및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 FTA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며 특히 아세안 국가중에는 동 품목에 대해 FTA 미양허 품목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세율단위: %)

연번	FTA 협정	기본관세율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한-미	0	-	-	
2	RCEP(일본)	0	-	-	
3	한-EU	0	-	-	
4	한-중국	14	0	CTSH	
5	한-영국	8	0	CTH or MC50	
6	한-아세안	베트남	3	0	CTH or RVC40
		태국	비양허 품목		
		필리핀	3	0	CTH or RVC40

나. 전기식 액추에이터 FTA 활용실익 (수출금액 상위 국가 위주)

중국과 아세안국가 및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FTA 활용이 유리하며, 특히 베트남으로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는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율단위: %)

연번	FTA 협정	기본관세율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한-미	0	-	-	
2	RCEP(일본)	0	-	-	
3	한-영국	0	-	-	
4	한-중국	12	0	CTH or RVC40	
5	한-아세안	태국	10	5	CTH or RVC40
		필리핀	0	-	-
6	한-베트남	15	0	CTH or RVC40	
7	인도 CEPA	15	0	CTSH+RVC35	

5. 맺음말

자동화 시대에 맞춰 로봇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휴머노이드 로봇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로봇과 차량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기이다. 앞으로 액추에이터는 전 산업군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며, 이미 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무역거래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인만큼 액추에이터 수출입업체는 FTA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FTA TRAD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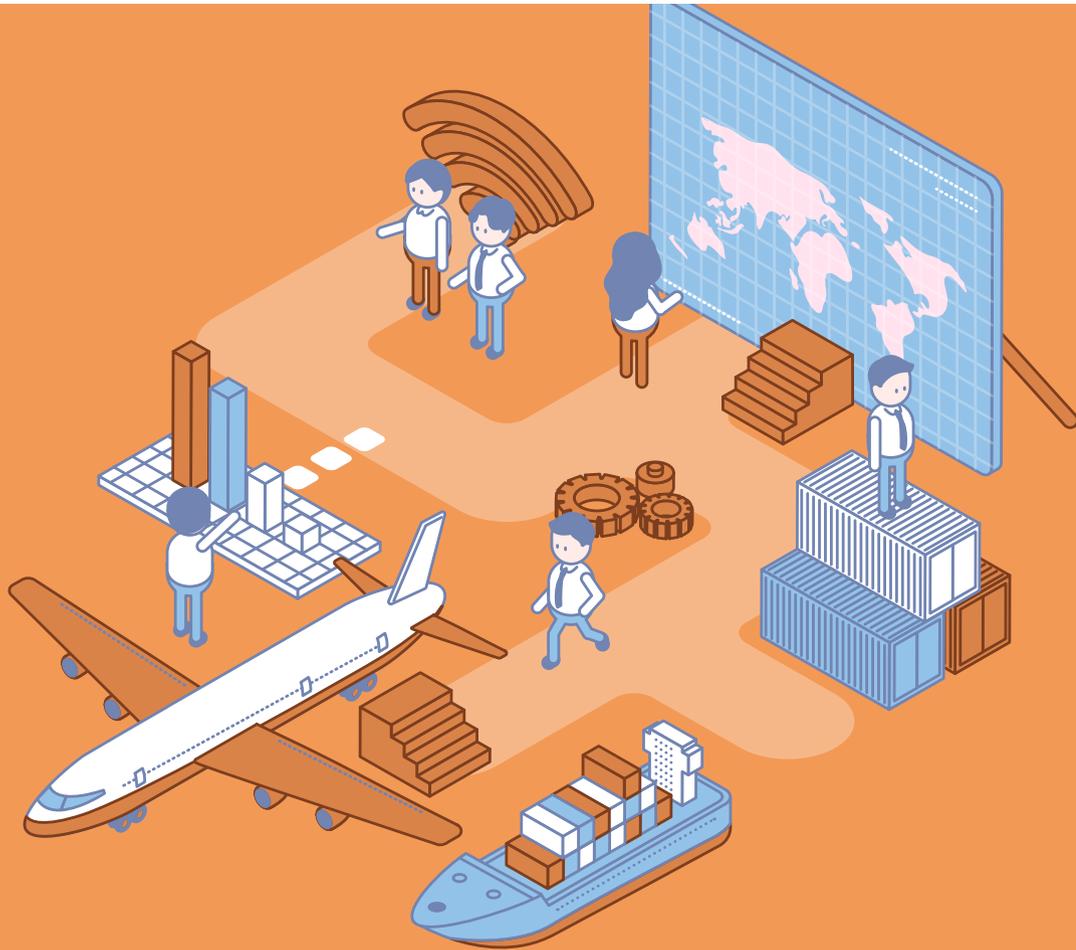
06

활용하기 쉬운 FTA-PASS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PASS

- 인보이스 작성 신규기능 안내 -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인보이스 작성 신규기능 안내 -



구본현
한국원산지정보원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에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 자료 보관, 사후 검증 대비 등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중 자율발급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 한 원산지증명서다.

그 중 한-EFTA FTA(스위스산 치즈 제외),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뉴질랜드 FTA(통일서식 사용 가능), 한-영국 FTA, 한-이스라엘 FTA에 한해서 상업송장 등의 상업서류에 간단히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의 신규기능인 인보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인보이스 (Invoice) 기능 개요

송품장 신고방식 국가의 원산지증명은 협정에서 명시한 신고문안을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기재함으로써 FTA증명서로 갈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별 상이한 상업서류로 인한 혼란 및 서류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를 지원하고자 FTA-PASS가 표준 인보이스 작성 기능을 추가하였다.

FTA-PASS가 표준 인보이스 작성기능을 지원하는 FTA협정은 총 5개로 EU, EFTA,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이다.

FTA-PASS 지원 협정별 C/O 발급방식 현황(총22개)

기관발급(7)	자율발급(15)	
법정서식	법정(또는 권고)서식(10)	신고문안 기재(5)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인니, APTA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캄보디아	EU, EFTA,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인보이스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 표준 인보이스를 출력할 수 있으며 필수로 입력해야할 정보는 아니다. 만약 인보이스 정보를 추가로 기입하지 않는다면 신고문안만 제공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활용 방법



2. FTA-PASS 활용 방법

실무자가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FTA-PASS를 통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원산지정보를 등록하여 원산지판정을 수행한다. 원산지판정 결과로 토대로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메뉴는 FTA증명서(자율)에서 작성한다.

Step 1 원산지증명서 [작성] 버튼 클릭

Step 2 적용협정, 송품장(송품장번호, 발행일), 수출-생산-수입자 정보 작성

Step 5 원산지증명서 출력

① 원산지신고서 문안



원산지 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010-20-20000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010-20-20000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대한민국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8 Yatap-ro 205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2024년 05월 28일
(Place and date)
(장소 및 신고일자)

Kim Soyeon *Soyeon Kim*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o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② 인보이스 : Remarks 란에 협정별 신고문안을 기재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효
력 발생

COMMERCIAL INVOICE					
1. Shipper / Exporter : KIOI B Yatapro 208beong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82-00-100-0088 / +82-00-100-0088 user88@test.go.kr		3. No. & date of Invoice : INVO-EU-202405-001 2024-05-28		9. No. & date of L/C :	
2. Consignee : Deutsch Electron Gieselerstr. 118A, D-10713 Berlin, Deutschland +49-30-3257-9856 / +49-30-9856-3257 hoffmann@deutsch.com		10. L/C issue bank :			
3. Notify party : KIOI B Yatapro 208beong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82-00-100-0088 / +82-00-100-0088 user88@test.go.kr		11. Remarks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4. Port of loading : Korea	5. Final destination : Germany				
6. Name of vessel / Flight no : KOREAN AIR	7. Sailing on or about : 2024-05-28				
12. Marks and numbers Pkgs.	13. Description of good(s)	14. Quantity/unit	15. Unit-price	16. Amount	
////////////////////////////////////	CCTV Camera 1 Channel / 1 Channel ////////////////////////////////////	5 EA ////////////////////////////////////	724 ////////////////////////////////////	3,620 ////////////////////////////////////	
This Invoice consist of 1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Signature: <i>Soyeon Kim</i>		Company or Authorised Body			
Name: Kim Soyeon		Title: staff			
Date: 28/05/2024		Telephone : +82-00-100-0088 Fax : +82-00-100-0088 E-Mail : hisally2@origin.or.kr			

3. 마무리

FTA-PASS는 기업별 상이한 상업서류로 인한 혼란 및 서류 작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율증명 활성화를 위해 송품장 신고방식 협정에 대해 표준 출력 서식을 제공한다. 기존 입력항목에서 송품장 정보만 추가로 입력하면 해당 기능 활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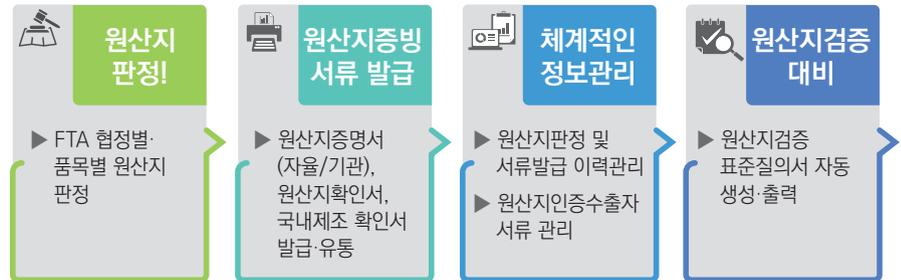
■ 시스템 개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2. FTA-PASS 주요기능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수출 (재고관리기능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를 산출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출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13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수출/국내공급 (재고관리기능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간편형	국내공급 (영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체험형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 -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8:00~17: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





FTA TRADE REPORT

07

원산지 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한일권
부산세관FTA검증과장
경남대 겸임교수

* 저자가 한국무역학회지 제48권(2023.12월)에 게재한 "관세당국의 FTA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2023년까지 21건, 총 59개국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중은 78.4%를 차지하며 FTA 활용률은 2023년 수출과 수입 모두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FTA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에 있어 사후 검증의 위험성이 있다. 다시말해서 상품이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원산지검증 체크리스트

요건	내용	성격 ¹⁾
거래당사자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생산자	형식
품목요건(HS)	관세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양하)한 품목	
운송요건	제3국 경유없는 직접운송의 원칙	
원산지증명 및 특혜적용신청요건	적법하게 발급(작성)된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이어야 하고, 협정관세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가 체약국임을 판정하는 기준	실질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²⁾을 통해 검토된다. 관세당국은 수출입업자 등 검증 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수입자에 대한 검증의 경우, 원산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해외 거래처인 수출자(제조사 포함)를 대상으로 국제검증³⁾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검증업무는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목적이며, 국내에서는 정부기관 중에서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검증 대상이 되는 절반 정도의 기업은 원산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원산지검증 대상 기업은 원산지 위반 위험 기업으로써 사전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조사가 착수되고, 실제 검증 결과

- 1) 특혜요건별로 형식과 실질로 구분하는 것은 관세행정 실무적인 구분을 차용한 것으로, 형식적 요건의 경우 위반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곧바로 특혜배제가 가능한 요건들이라는 관점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명명
- 2) FTA협정에서는 「원산지검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FTA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검증」과 「조사」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서에서는 FTA협정에 입각하여 가급적 「원산지조사」 보다는 「원산지검증」으로 기술
- 3) 검증방식에 따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고,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처럼 직접검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인 관세청에서 직접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 EU, 아세안, 중국등과의 FTA처럼 간접검증의 경우에는 수출국 검증당국에 검증을 의뢰하는 형태로 수행



의 다수가 위반으로 판정되고 있는 것은 FTA체결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 사후검증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 한국 관세청이 실시한 원산지 검증업무중 수입검증에 대하여 조명⁴⁾하고, 그중에서 세관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된 한-중 FTA 사례를 분석하여 관세청의 검증행정의 흐름과 주요 특혜배제 사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특혜배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에게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FTA 원산지 수입검증 프로세스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원산지 수입검증 업무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당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⁵⁾ 다만,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첫 서면검증 이전에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② 관세조사 중인 업체 ③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 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⁶⁾ ④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⑤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자율점검」단계를 운영하고 있다.⁷⁾

자율점검 단계에서 수입자가 제출한 자율점검표에 의거하여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종결처리되나,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TA관세특례법 제17조에 규정된 원산지검증 착수가 이루어진다.

4)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수출검증업무도 있음.

5) FTA관세특례법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

6)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규정으로서 다음의 2가지 요건(①최근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 30억원 이하인 것 ②최근 4년 이내에 수출입관련 법령위반으로 통고처분이나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충족하는 기업

7)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자율점검)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검증이 시작된다. 먼저 국내서 면과 현지검증을 거친 후,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검증까지 진행되는데, 국제검증이 직접검증인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직접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종결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반면,⁸⁾ 간접검증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기간이 17개월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관세청, 2022). 이는 협정별 간접검증에 대한 회신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은 최소 30일부터 최대 15개월까지 매우 상이하다. 이에 따라 원산지검증 소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표 2 간접검증에 따른 협정별 회신기한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15개월	2개월	3개월	10개월	150일	10개월	150일	30일
베트남	중국	중미	영국	인니	이스라엘	RCEP	캄보디아
6개월	6개월	150일	10개월	2개월	10개월	90일	90일

3. FTA 협정별 원산지 수입검증 현황 분석

FTA협정별로 수입검증 현황을 분석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도 총 2,306업체에 대한 수입검증이 종결되었고, 1년 평균 577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반비율은 52%이다. 처리건수 100건 이상 종결한 협정을 보면 EU(572건), 중국(509건), 아세안(376건), 미국(296건), 캐나다(191건), 인도(110건) 순이며, 6개국의 검증건수가 전체의 약 90%에 달한다. 4개년 전체 고르게 위반율의 평균치 보다 높은 협정은 한-중 FTA이다.

8) 직접검증을 통한 국제서면검증시 자료제출기간은 칠레(제5.8조), 싱가포르(제5.7조), 콜롬비아(제3.25조), 호주(제3.23조, 제3.24조), 중미(제3.25조)의 경우 30일, 페루(제4.8조), 뉴질랜드(제3.24조)의 경우는 90일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9) APTA(일반특혜), 비특혜와 관련된 검증은 제외하고 FTA협정에 한정하여 집계된 통계임



표 3 FTA 원산지 수입검증⁹⁾중결 현황 분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개년 합계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건수	위반 건수	검증 합계	위반 건수
	위반 비율		위반 비율		위반 비율		위반 비율		위반 비율
557건	236건 42%	746건	400건 54%	571건	324건 57%	432건	236건 55%	2,306 건	1,196건 52%

자료 : 관세연감(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원산지규정 위반사유와 그에 따른 추정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산지 위반이 가장 빈번한 것은 실질요건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즉, 형식적인 위반요소 검증에서 실질적인 위반요소 검증으로 검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거래당사자요건 위반의 경우 미인증수출자 및 비당사국(제3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타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대국이 미회신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4 수입검증 결과 적발된 원산지규정 위반사유별 추정액

(단위: 백만 원)

위반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 합계		업체당 추정액
	업체	금액									
원산지 결정기준	108	18,744	233	23,617	131	9,172	121	16,340	593	67,873	114.5
품목요건	69	4,431	99	5,561	106	15,098	38	3,002	312	28,092	90.0
거래당사자 요건	20	5,268	27	3,430	5	1,384	2	86	54	10,168	188.3
직접운송 요건	-	-	3	1,881	1	9	-	-	4	1,890	472.5
기타	17	510	18	778	51	1,074	30	2,134	116	4,496	38.8
합계	214	28,953	380	35,267	294	26,737	191	21,562	1,079	112,519	104.3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한중FTA 수입검증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최근 원산지검증의 종결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관세청에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의 장단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데이터는 전국세관 원산지검증부서 조사자료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인 V-Map을 활용하였다. 분석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개년 동안의 종결 건을 대상으로 하며, 협정별로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HS)별로 수입검증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 후, 한-중 FTA의 특혜배제 건 총 557건에 대한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¹⁰⁾

한-중 FTA를 대상으로 산업별 특혜배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557건 중 형식요건에 따른 특혜배제가 474건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하였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지는 실질요건에 따른 특혜배제는 83건으로 14.9%를 차지하였다. 즉, 실질요건보다는 형식요건이 약 6배로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지 2년차인 2017년도부터의 검증인 관계로 형식적 요건위반이 실질적 요건위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협정발효 연차가 늘어날수록 형식적인 요건위반에 대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5 한-중 FTA 산업별 특혜배제 현황(2017~2021년)

구분	요건			배제 사유				총합계	비중
	서류 보관	결정 기준	실질 요건	C/O	HS	서류 보관	형식 요건		
농식품	1	51	52		34		34	86	15.4
화학		8	8	5	66		71	79	14.2
섬의류				7	124		131	131	23.5
금속		2	2		33		33	35	6.3
철강		4	4	2	15	1	18	22	3.9
기계		13	13	1	163		173	186	33.4
수송기기					1		1	1	0.2
정밀기기		4	4		13		13	17	3.5
총합계	1	82	83	24	449	1	474	557	1.0

주 : HS코드 분류 중 농식품은 제1,2,3,4부, 광물 제5부, 화학 제6,7부, 섬의류 제11,12부, 금속 제13,14부, 철강 제15부, 기계 제16부, 자동차 등 수송기기 제17부, 정밀기기 제18부를 의미함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V-Map)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10) 한-중 FTA는 수입된 검증 건이 가장 많고,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HS코드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종결사례로써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혜배제 사유 분석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요건 위반으로써 품목분류 위반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대상 물품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검증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¹¹⁾ 둘째, 물품의 특성상 기계류(16부, 제84류와 제85류)의 특혜배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혜배제 건수 중 기계는 33.4%로 186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기술개발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전자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품목분류의 쟁점이 많이 있는 부(Section)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위한 노력이 검증단계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¹²⁾ 셋째, 실질요건 위반은 농식품 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넷째, 서류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특혜배제이다. 물론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2건에 그치나 이는 거래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인 수출자(생산자)가 지속적인 경영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¹³⁾

5. 수입자 등 무역업체에 대한 시사점

형식적인 요건의 배제사유는 크게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요건, 서류보관요건으로 구분된다. 이중 특혜대상물품인지 여부를 따지는 품목분류요건을 위반한 건수(449건)가 특혜배제의 전체건수(557건) 대비 8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형식적인 요건으로서의 FTA협정에서 허용된 특혜대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품목요건 위반은 대부분 품목분류번호의 오류나 품목분류의 잘못에서 기인하는데¹⁴⁾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적용하는 HS 번호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즉,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수출국의 기관이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HS 번호는 대부분 수출국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협정관세

11) 협정관세는 협정당사국간에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양허)한 품목에 한해서 적용함. 따라서 협정관세는 협정별로 정한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품목과 적용되는 세율도 상이할 수 있음.(이영달, 2019, p.128)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오류, 품목분류체계의 문제, 수출자의 신고 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12) 제84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면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이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가 40% 또는 45% 이상 실현되어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설정됨. 제85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하는 선택기준을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두고 있음

13) 국제검증 과정에서 중국 내 수출자가 폐업의 사유로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례임. 이에 더해 수입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이 되지 않거나 회신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수입관세당국의 현지검증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임

14) 실제로 품목요건의 위반으로 특혜배제된 건을 분석한 결과 FTA협정에서 특혜품목으로 분류된 물품번호(HS)으로 신고하였다가, 검증과정에서 특혜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는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번호를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거나, 한국의 HS번호 체계에 맞춰 세번을 확정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사후 원산지검증과정에서 품목요건 위반으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2차적인 문제도 연계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의 정확한 세번이 무엇인지에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FTA관세특례법 제3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원산지인증 서류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다는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¹⁵⁾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를 활용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HS 번호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수는 미미했으나, 거래상대방인 해외수출자(생산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국제검증 단계에서 원산지 입증자료의 제출이 되지 못하여 특혜배제 처분을 받은 사안도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 교섭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의 경영 지속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에서 수행한 수입물품에 대한 FTA원산지검증종결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관점에서 한차원 높은 생생한 FTA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5)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 체결단계에서 활용할 여지는 있다.



FTA TRADE REPORT

08

FTA 지도

주요국의 FTA 체결 및 교역현황

- 미국, 중국, EU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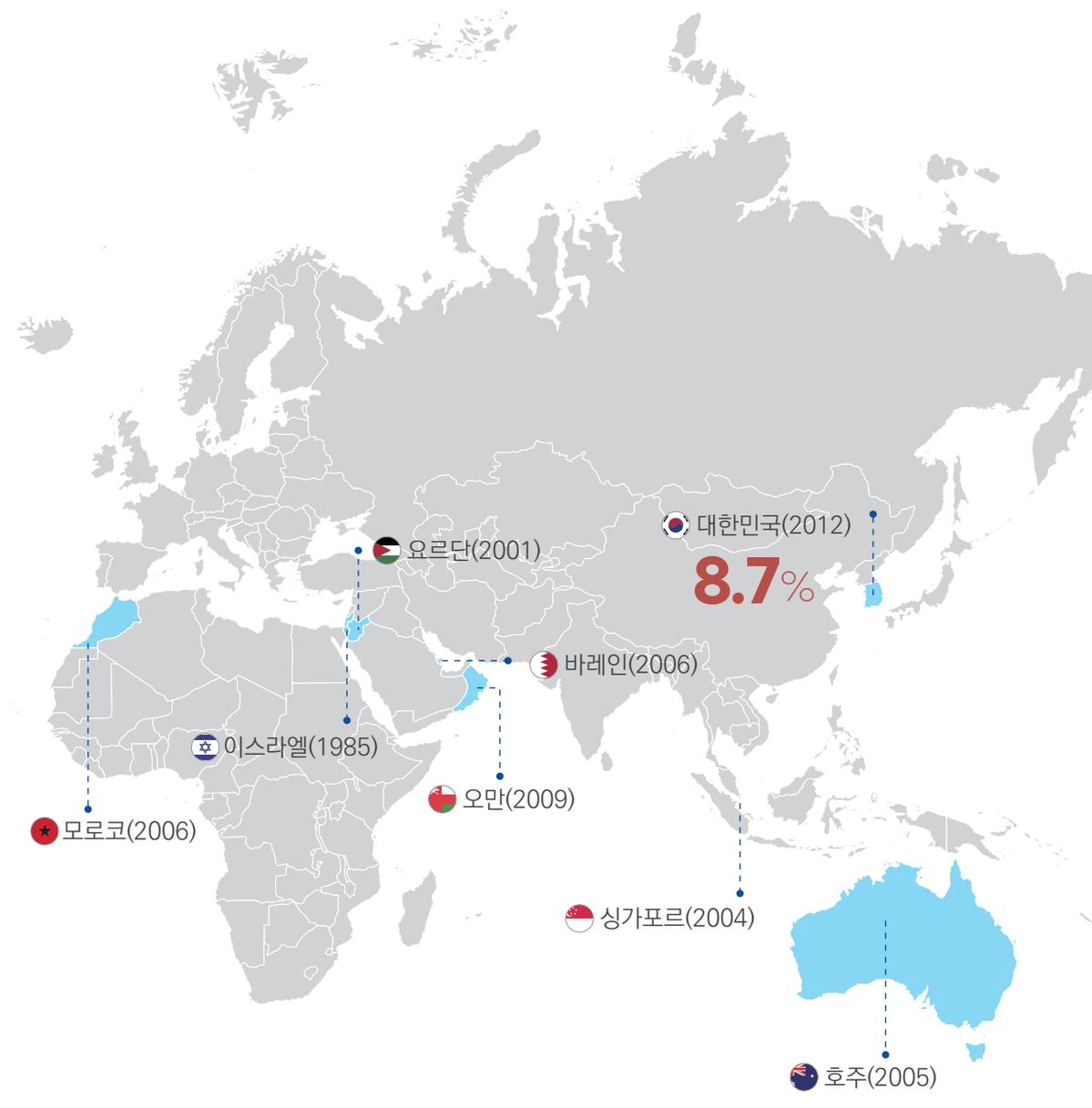
분석 배경

최근 주요국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공급망 변화 등 통상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주요국의 교역변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 중에서 교역비중이 큰 주요 3개국(미국, 중국, EU)을 중심으로 해당국가의 FTA 체결현황과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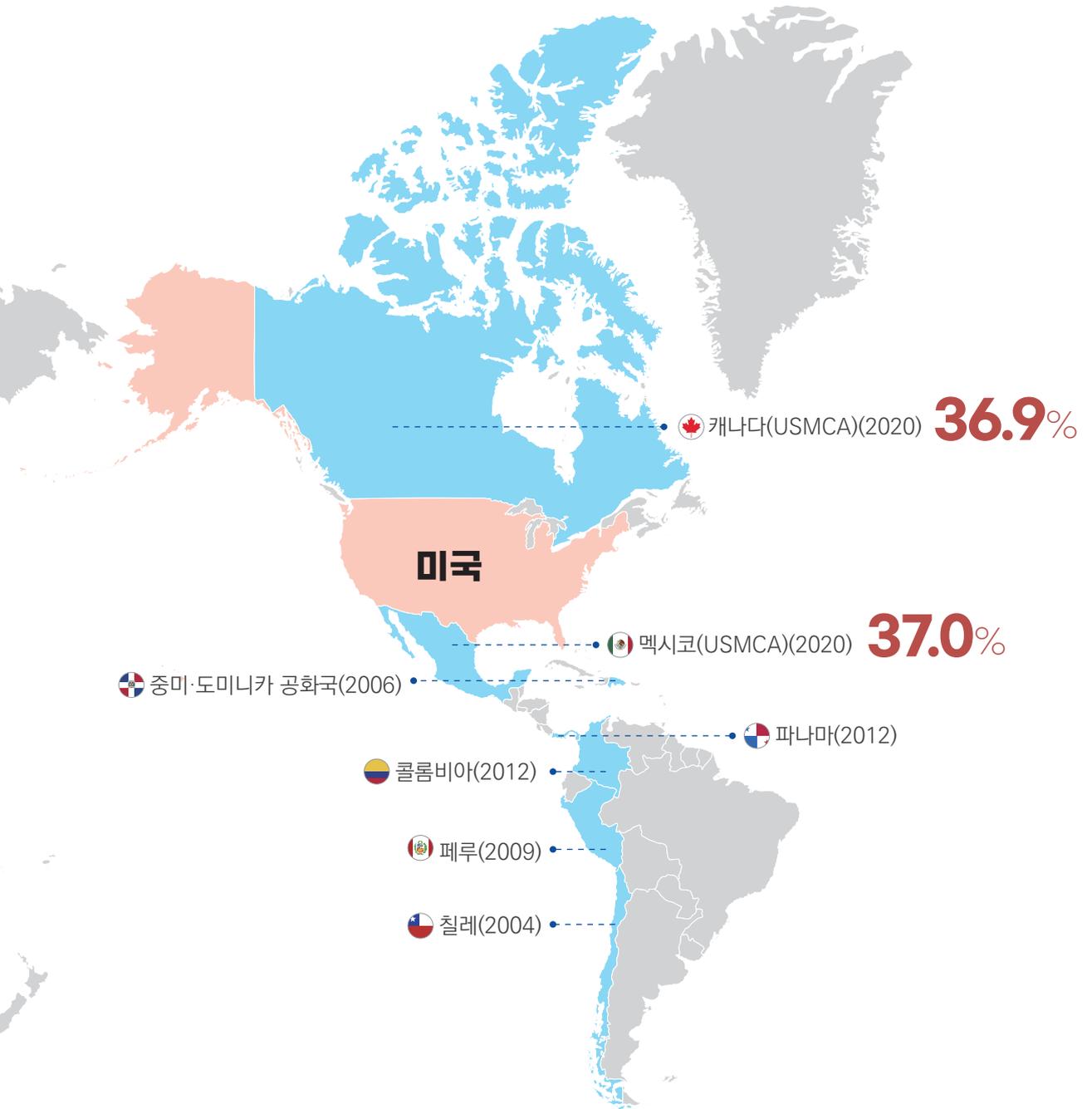




미국의 FTA 현황 : 총 14건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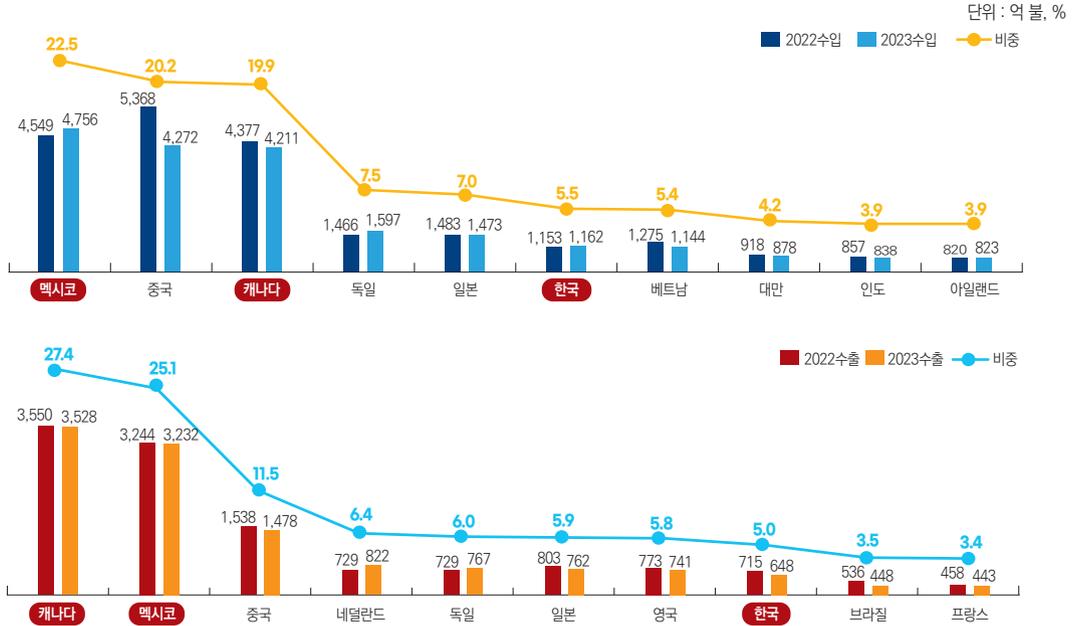
■ 총교역대비 국가별 비중 상위 3개국





1. 미국의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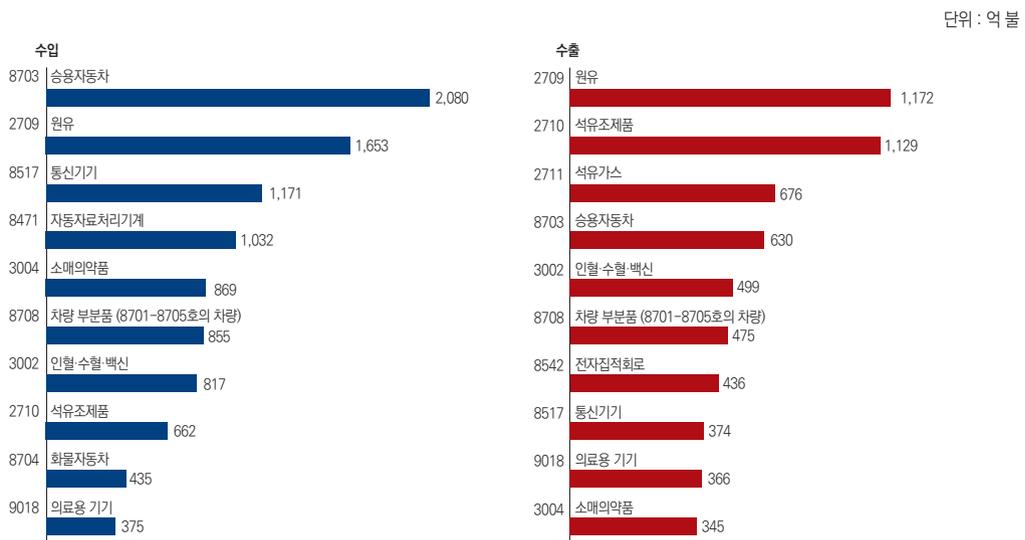
미국의 상위 10대국 수출입 현황



자료: K-stat, 20개국 이하 생략하여 작성 * 미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2. 미국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현황(HS 4단위 기준)

미국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3년 기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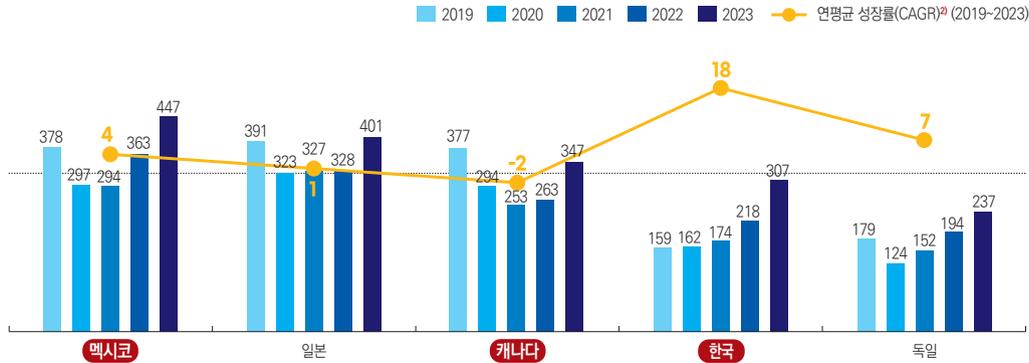
자료: K-stat

1) 상위수출품목에 제8800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율표 체계상 부적합하여 해당 품목을 배제하고 10대 품목을 추출함

3-1. 미국의 수입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703호(승용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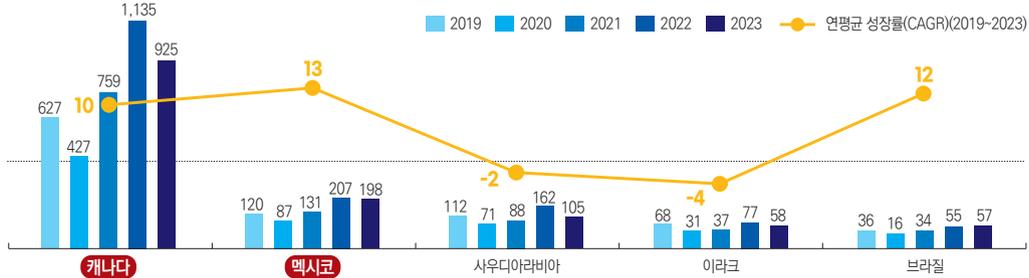
단위 : 억 불, %



자료: K-stat * 미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2. HS 2709호(원유)

단위 : 억 불, %



자료: K-stat * 미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3. HS 8517호(통신기기)

단위 : 억 불, %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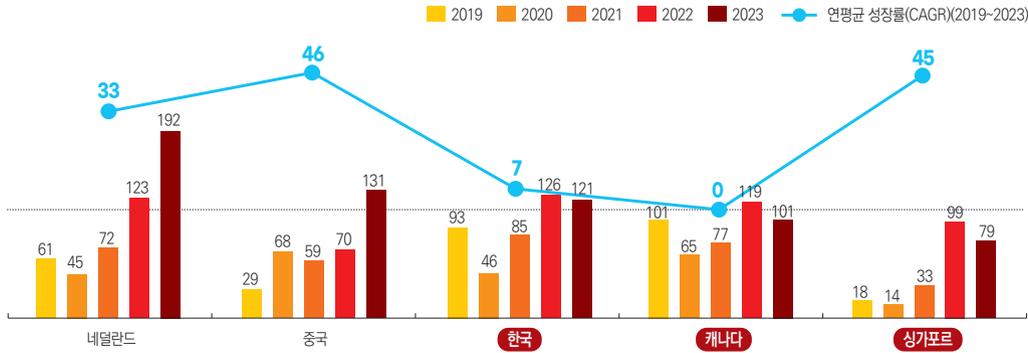
2) 연평균성장률(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3-2. 미국의 수출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2709호(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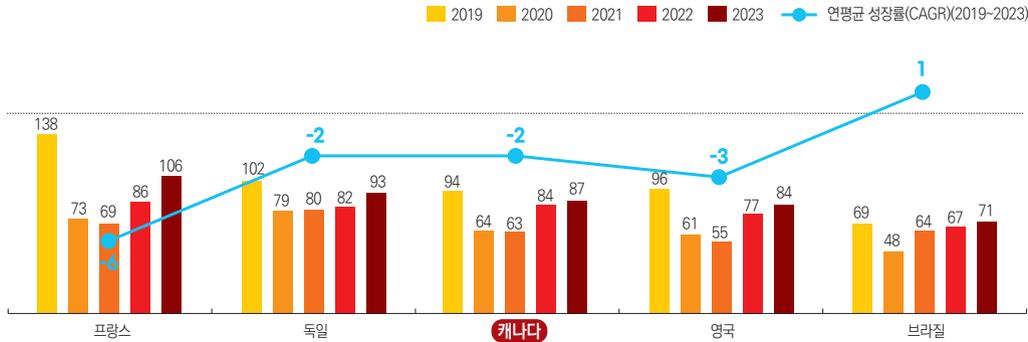
단위 : 억 불, %



자료: K-stat * 미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2. HS 2710호(석유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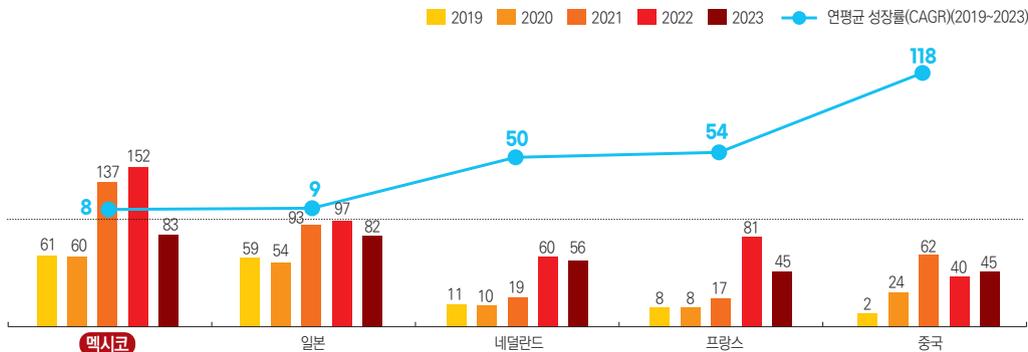
단위 : 억 불, %



자료: K-stat * 미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3. HS 2711호(석유가스)

단위 : 억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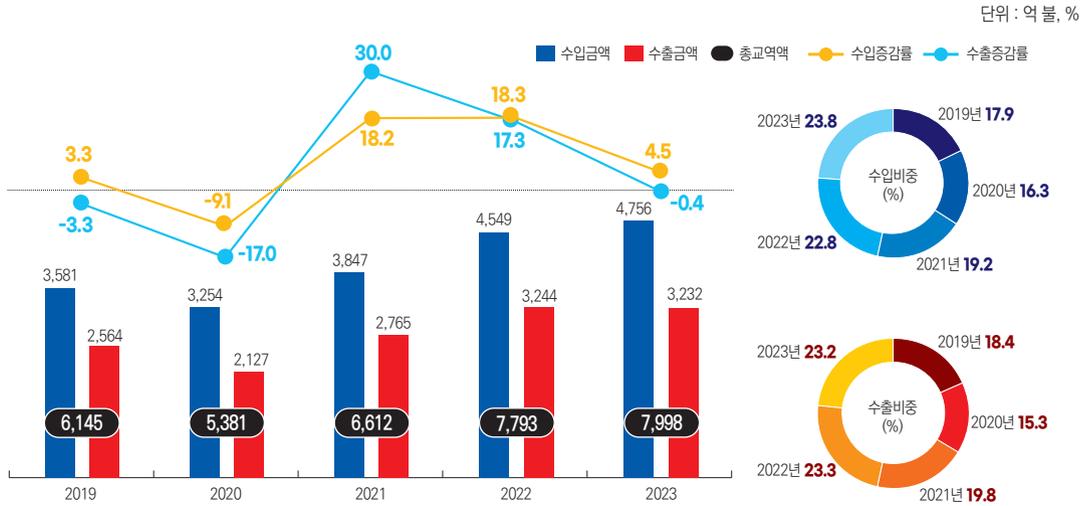


자료: K-stat * 미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4. 미국의 주요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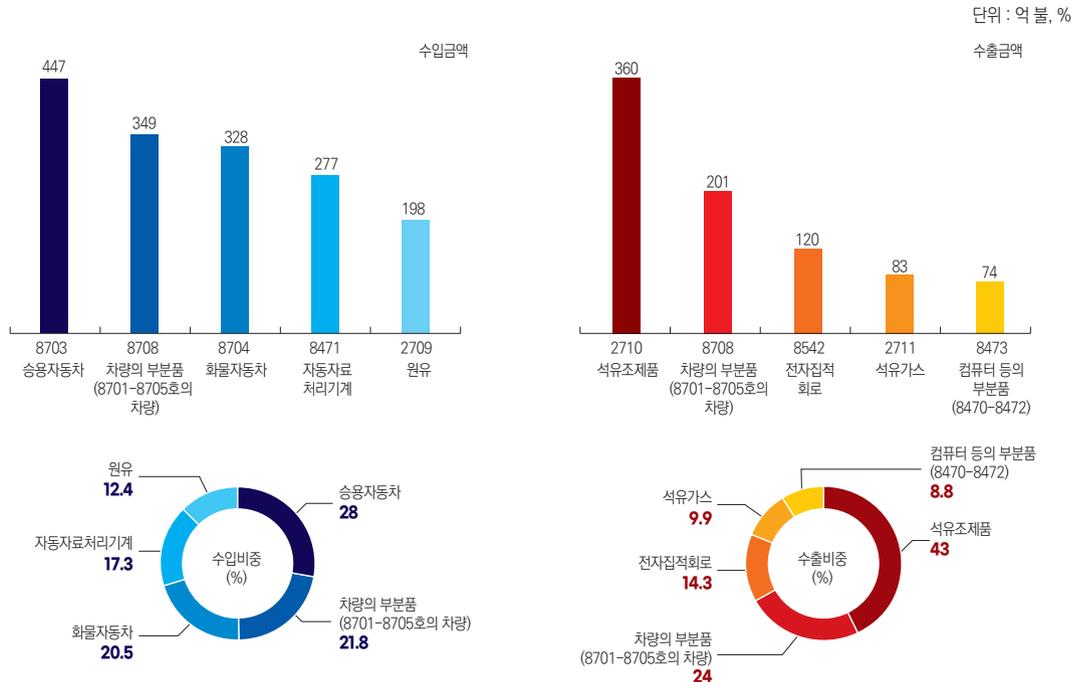
1) 미국 - 멕시코

미국-멕시코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미국-멕시코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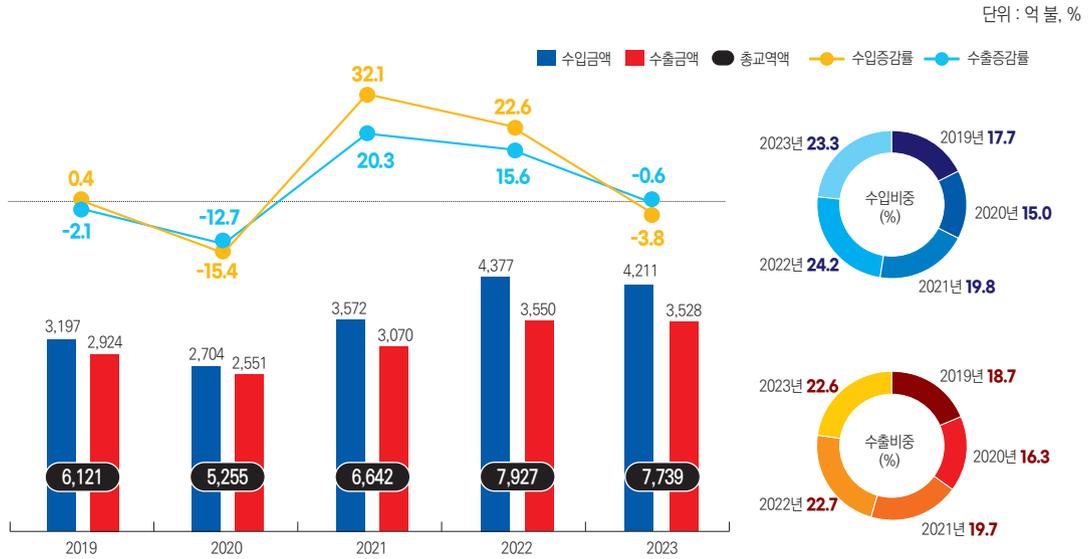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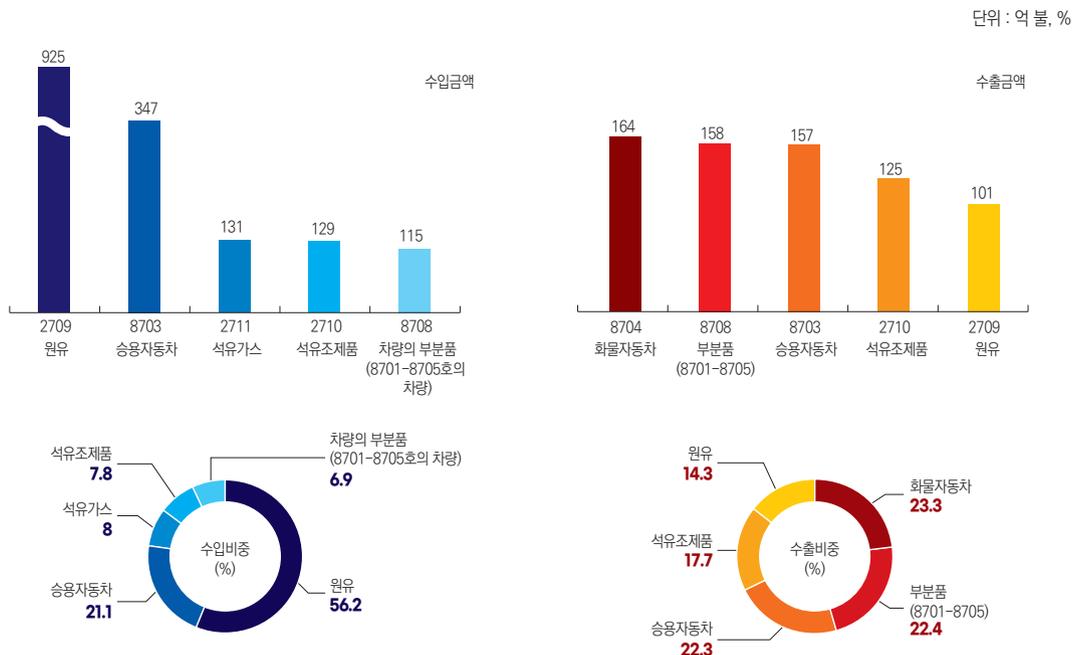
2) 미국-캐나다

미국-캐나다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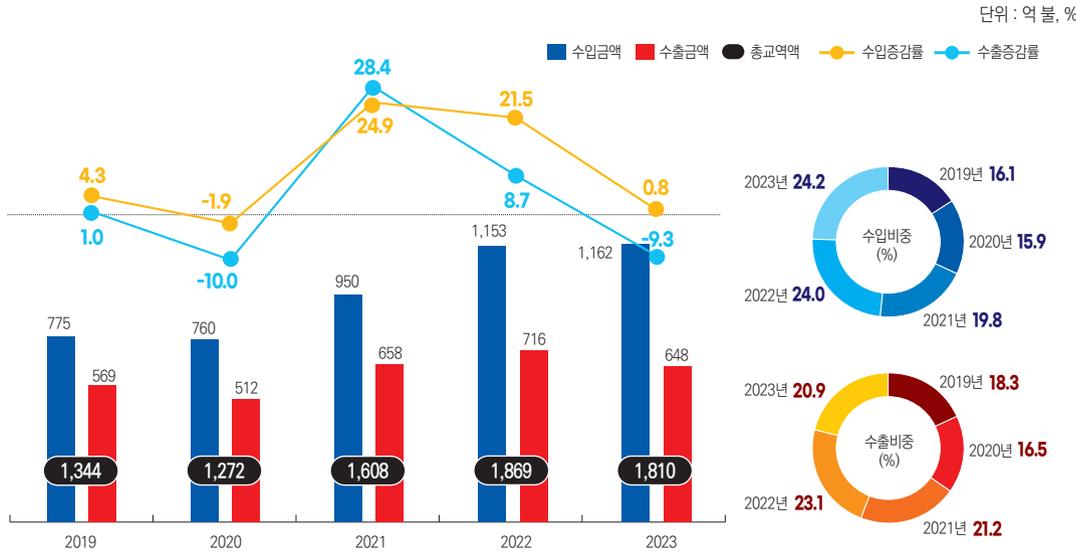
미국-캐나다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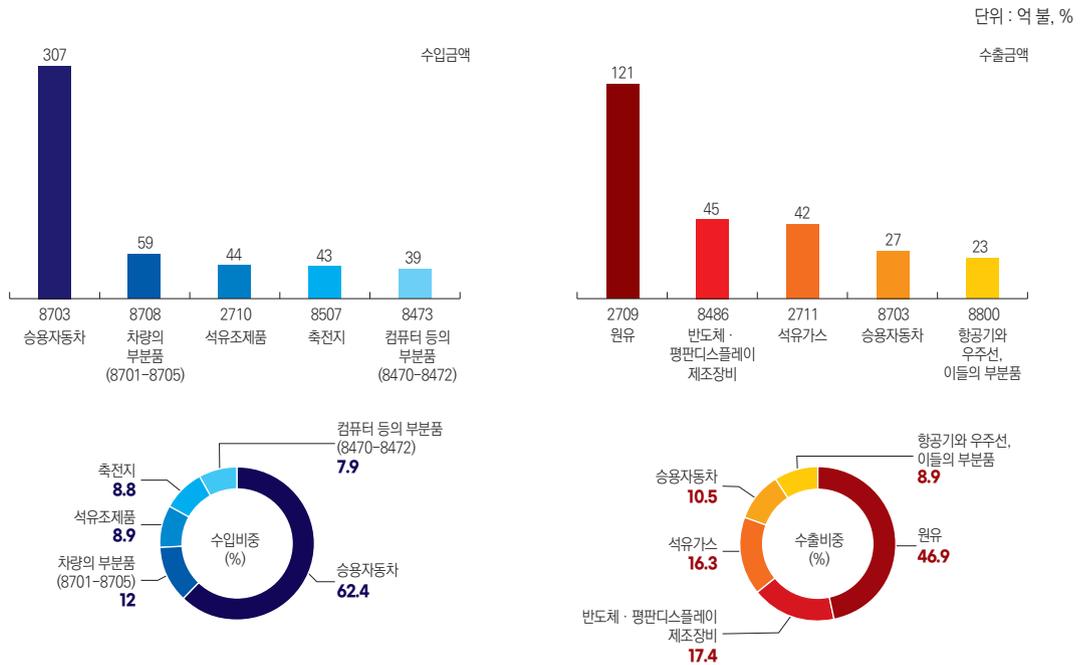
3) 미국-한국

미국-한국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미국-한국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중국의 FTA 현황 : 총 18건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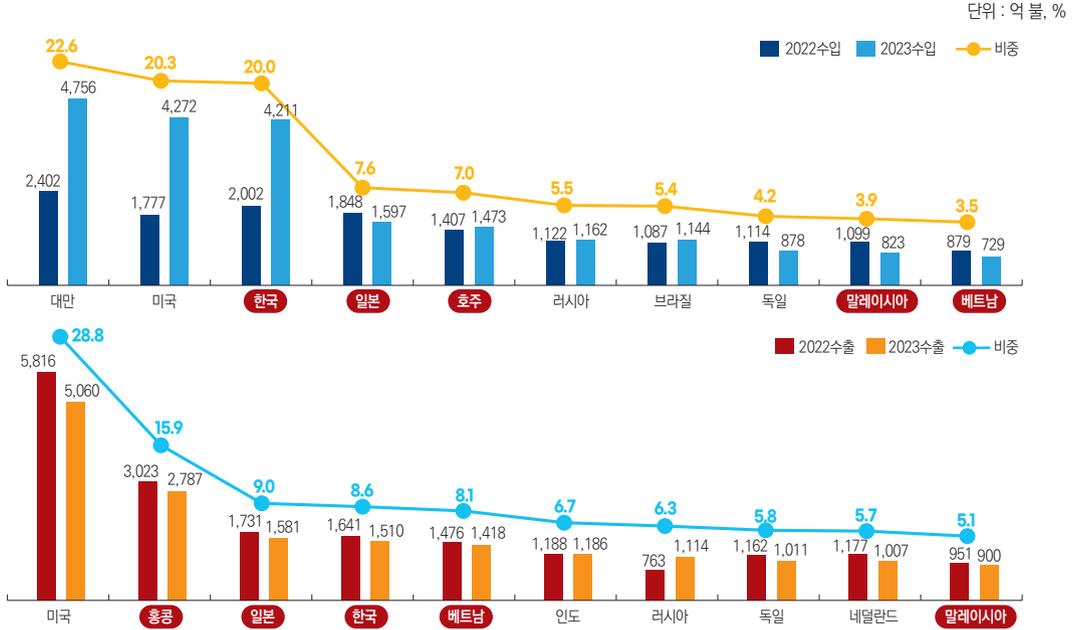
■ 총교역대비 국가별 비중 상위 3개국





1. 중국의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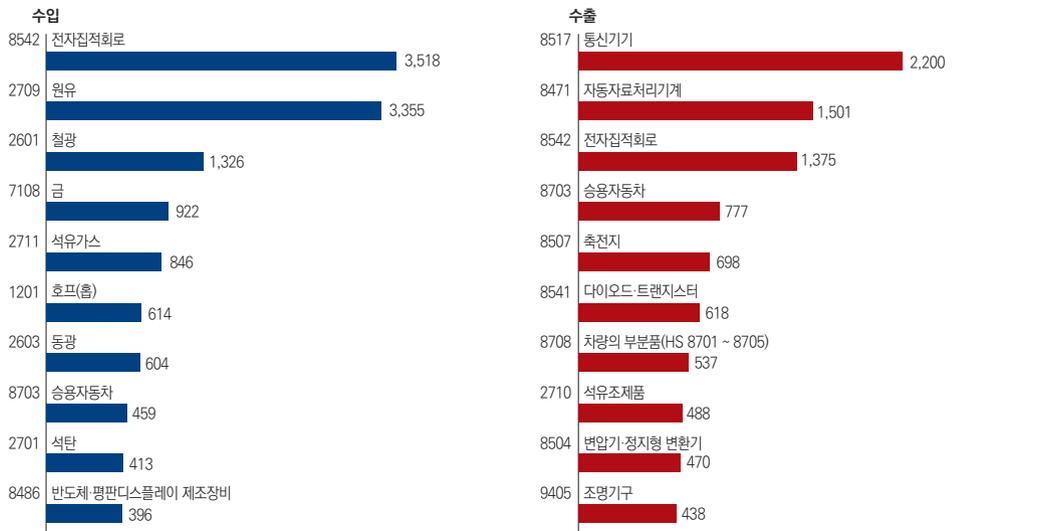
중국의 상위 10대국 수출입 현황



자료: K-stat, 20개국 이하 생략하여 작성 * 중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2. 중국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현황(HS 4단위 기준)

중국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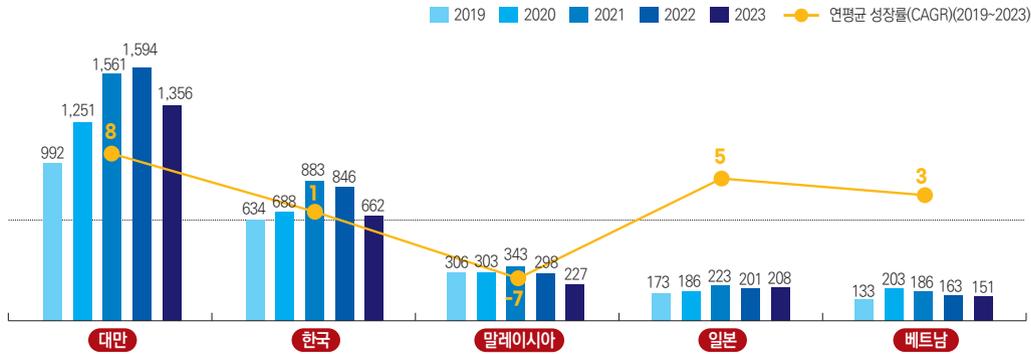


자료: K-stat

3-1. 중국의 수입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542호(전자집적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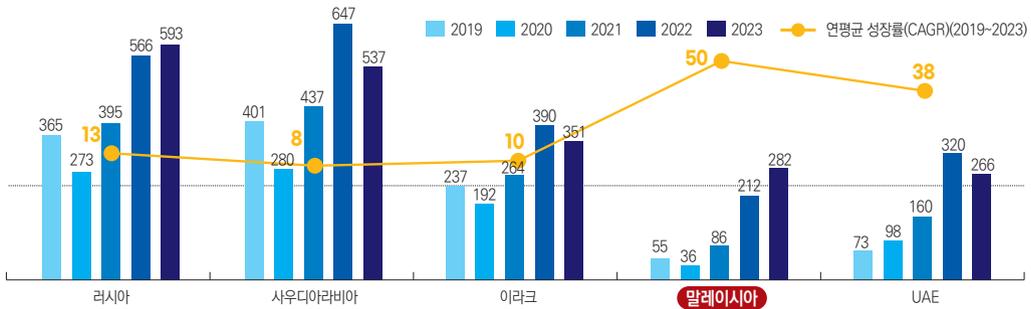
단위 : 억불, %



자료: K-stat * 중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2. HS 2709호(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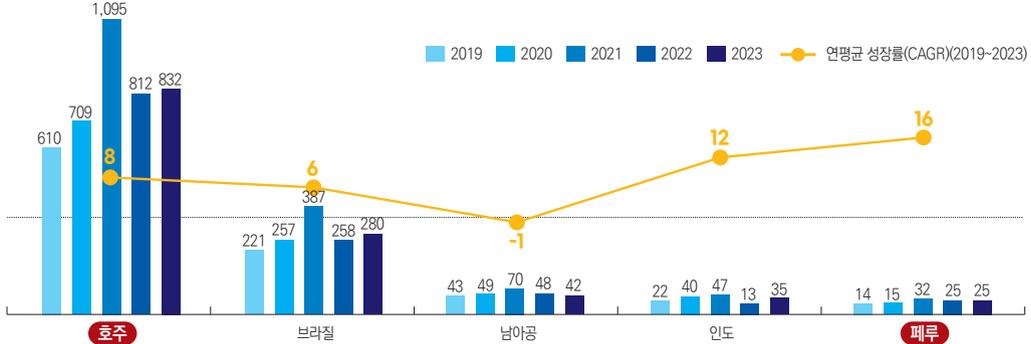
단위 : 억불, %



자료: K-stat * 중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3. HS 2601호(철광)

단위 :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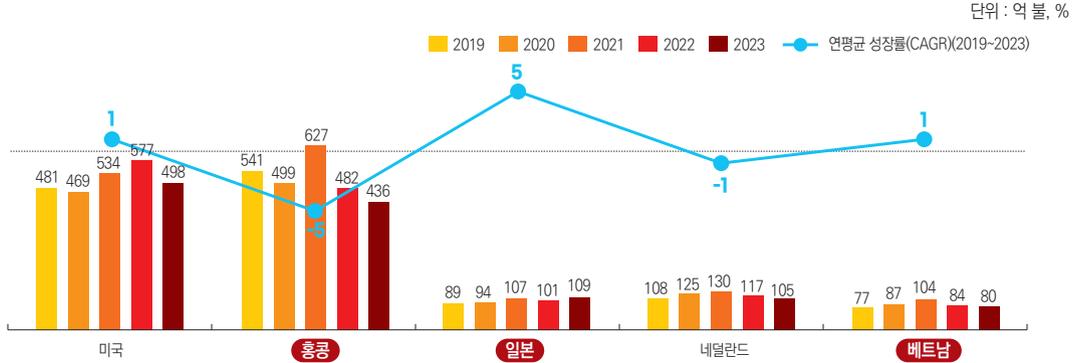


자료: K-stat * 중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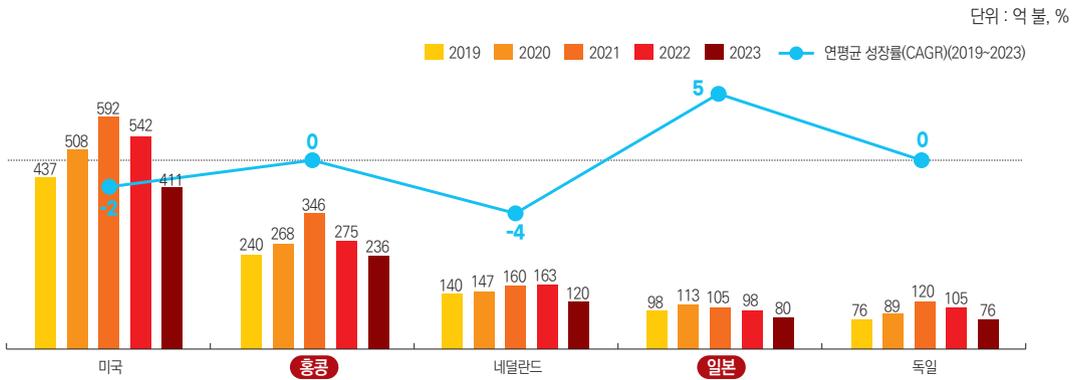
3-2. 중국의 수출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517호(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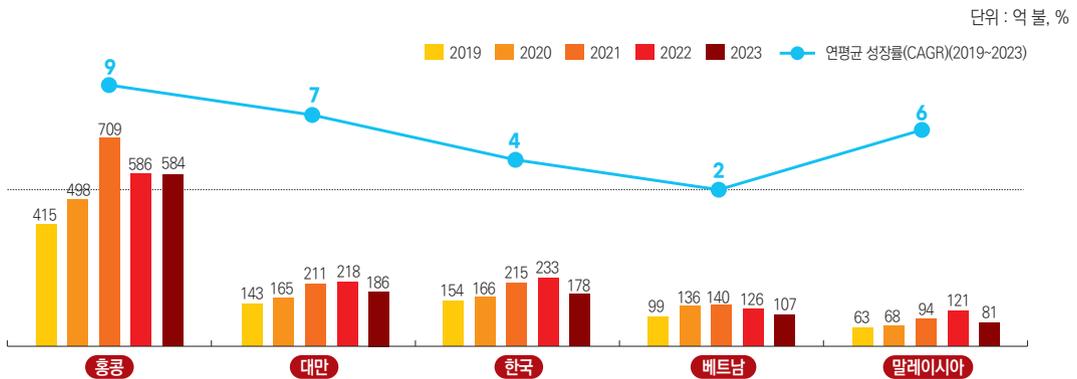
자료: K-stat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2. HS 8471호(자동차료처리기계)



자료: K-stat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3. HS 8542호(전자집적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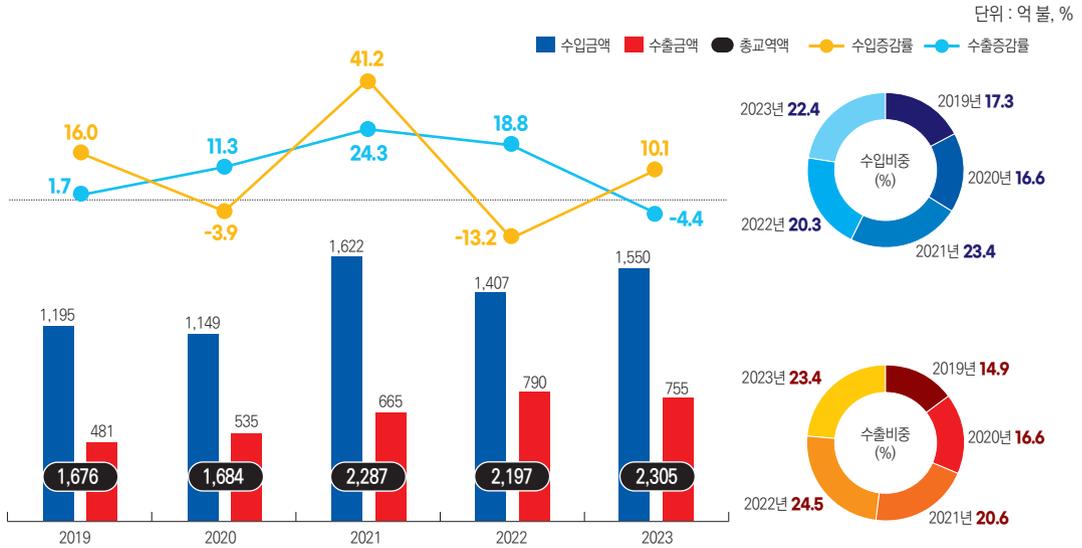


자료: K-stat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4. 중국의 주요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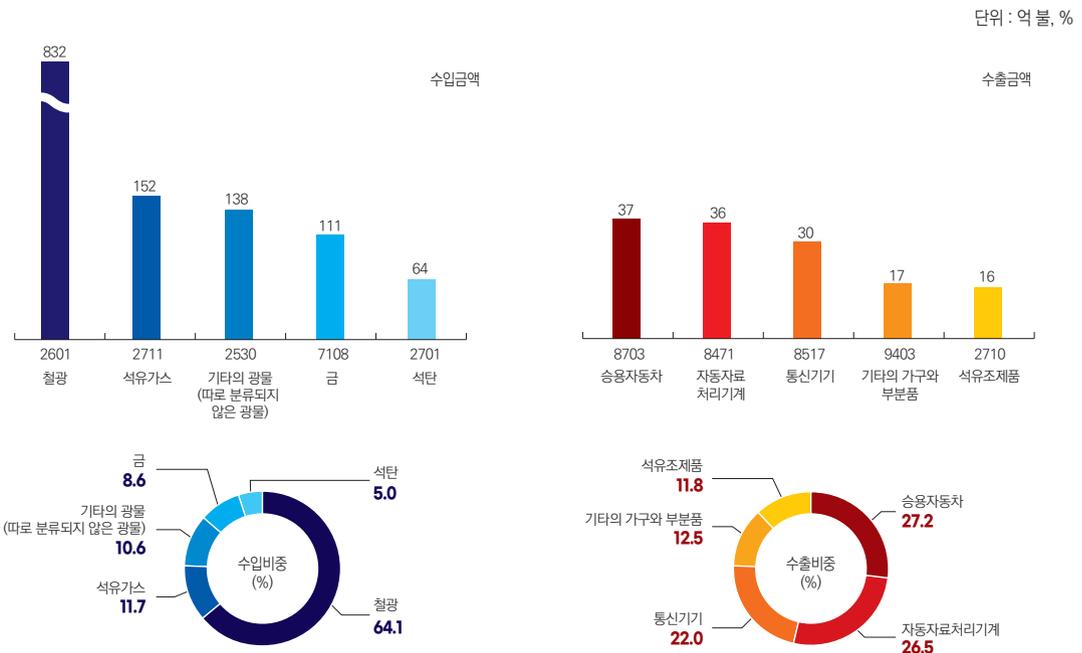
1) 중국 - 호주

중국-호주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중국-호주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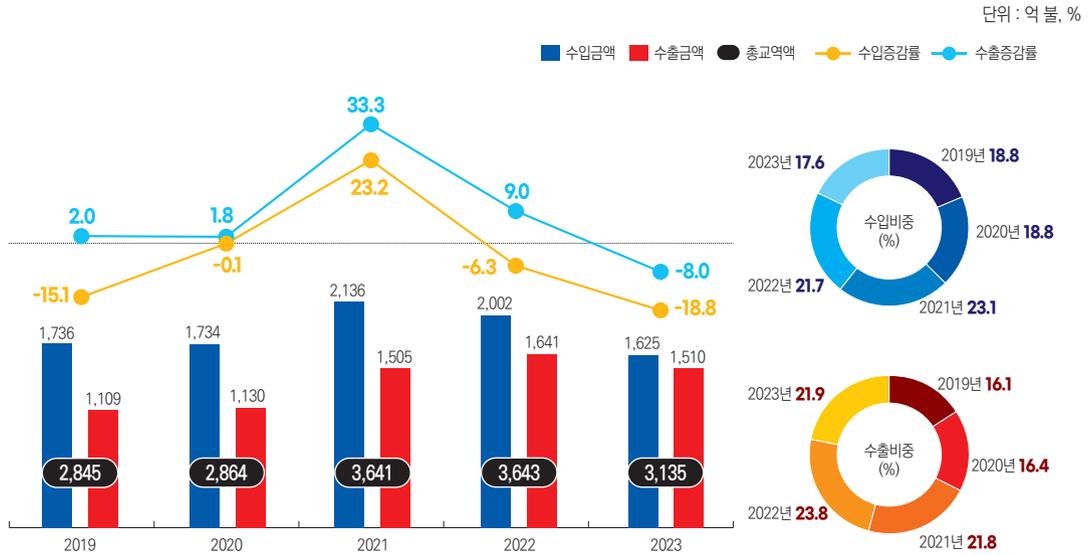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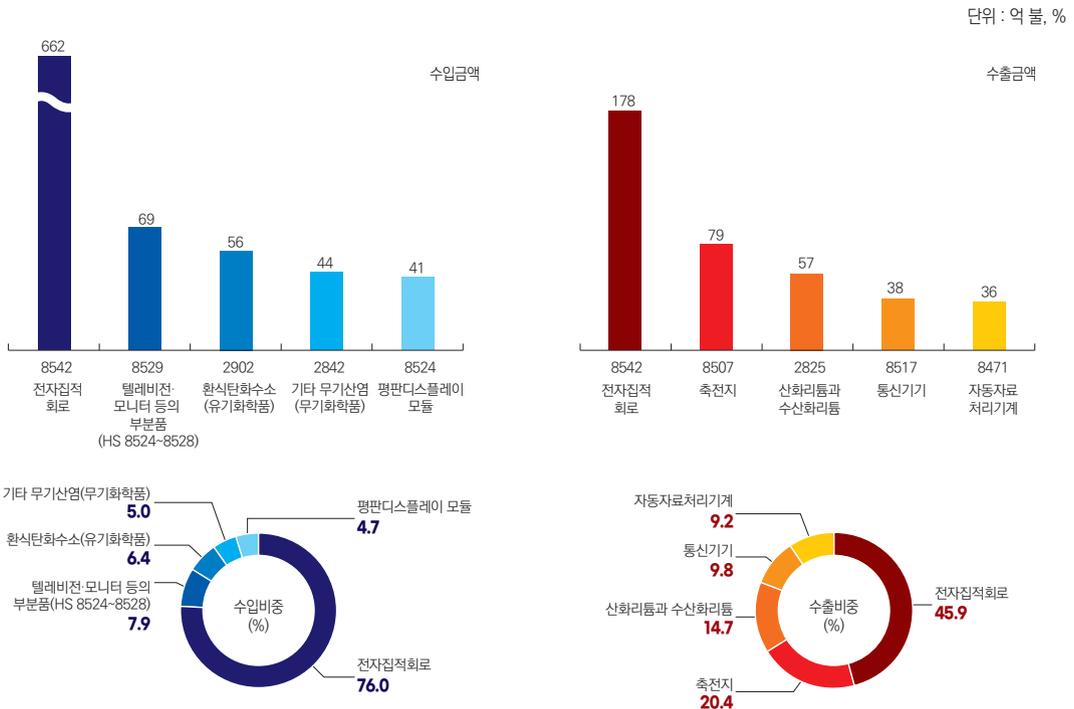
2) 중국 - 한국

중국-한국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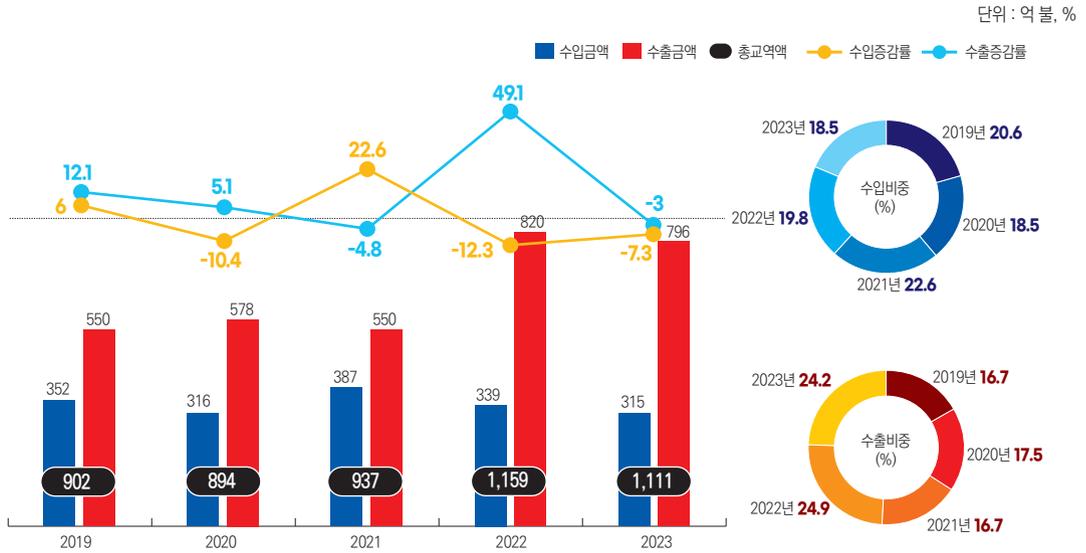
중국 - 한국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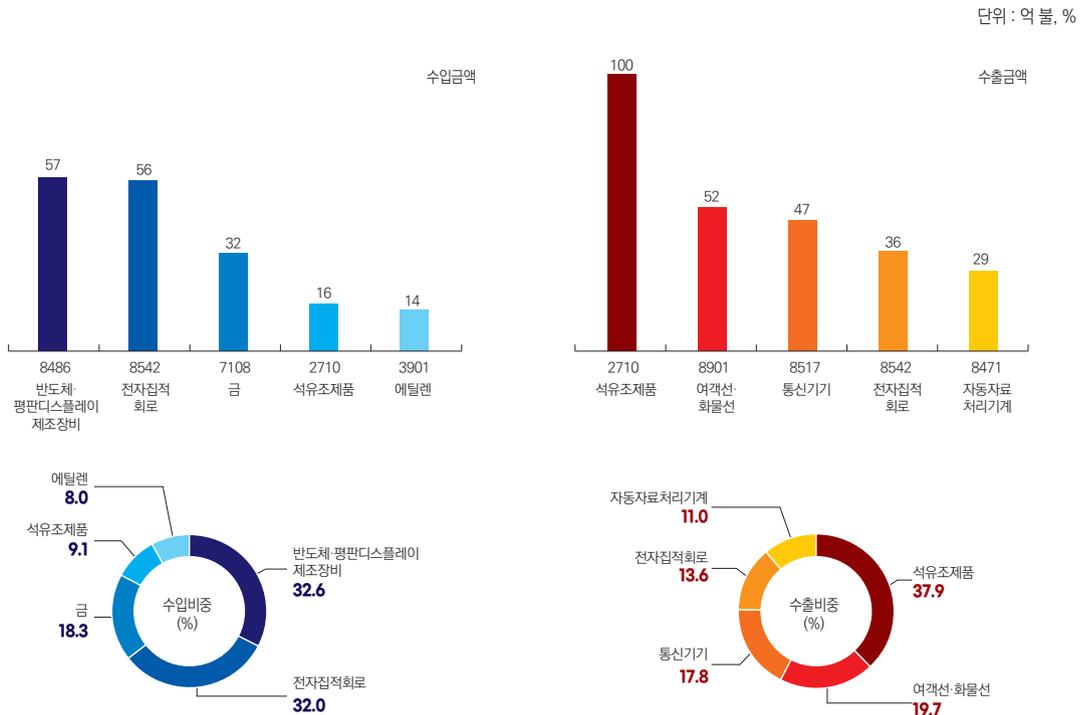
3) 중국 - 싱가포르

중국 - 싱가포르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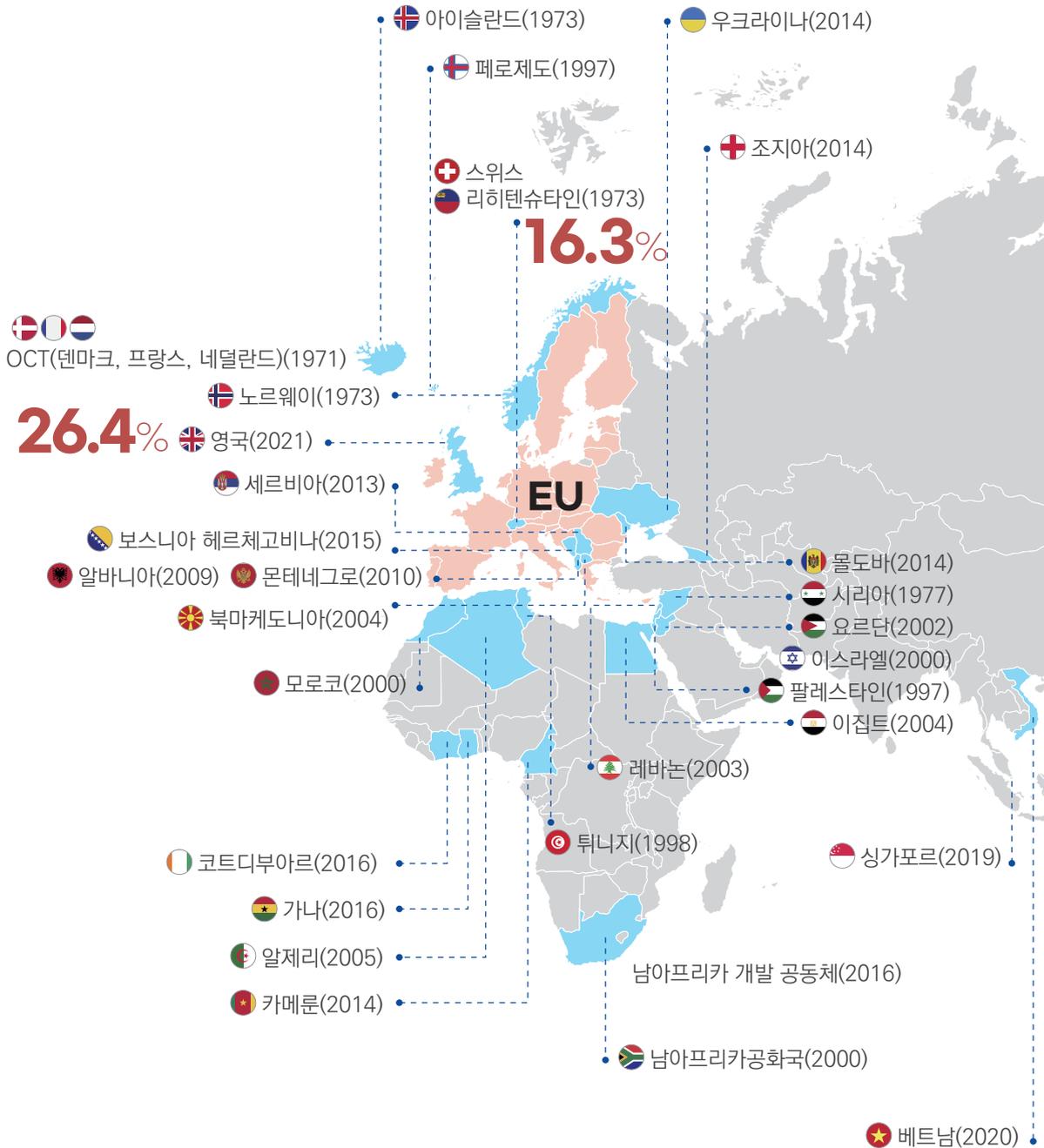
중국- 싱가포르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EU의 FTA 현황 : 총 41건 발효



■ 총교역대비 국가별 비중 상위 3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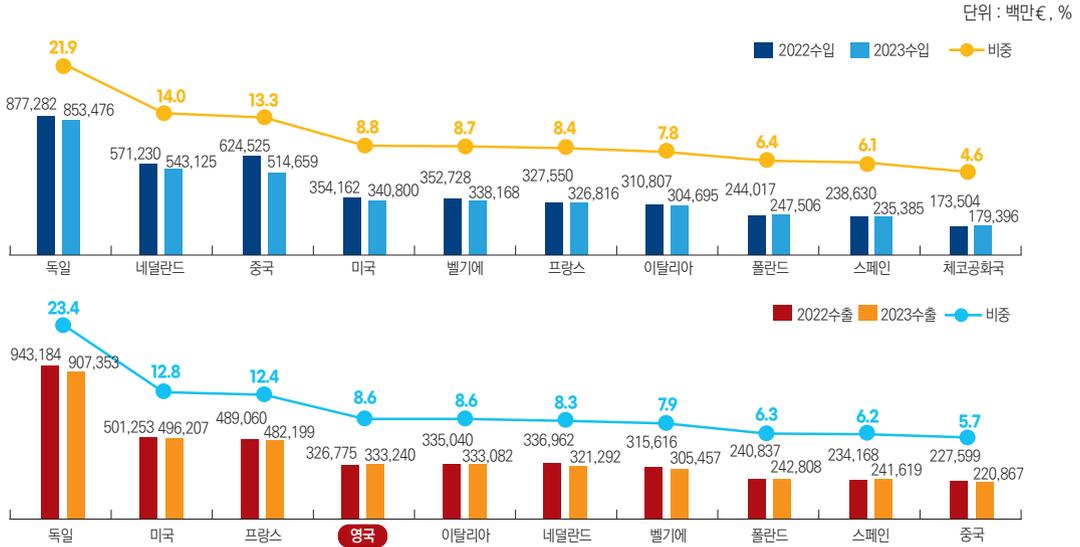




EU

1. EU의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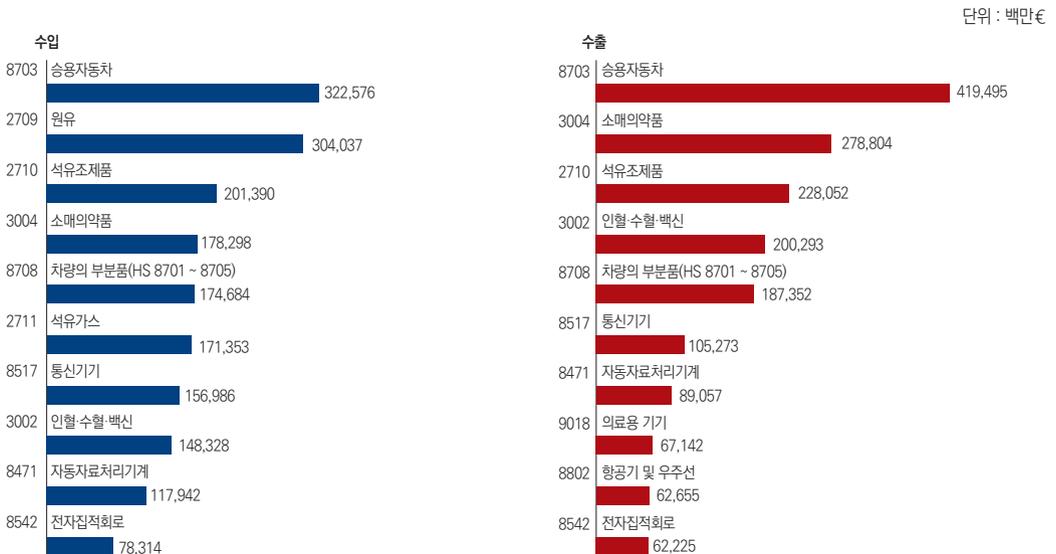
EU의 상위 10대국 수출입 현황



자료: K-stat, 10개국 이하 생략하여 작성 * EU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2. EU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현황(HS 4단위 기준)

EU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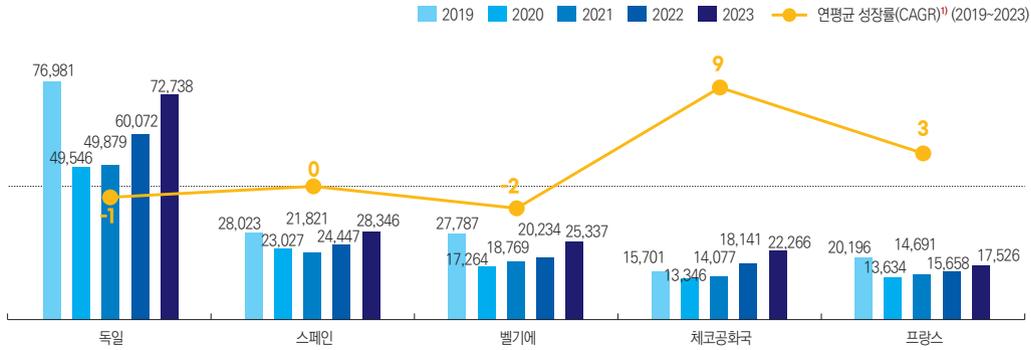


자료: K-stat

3-1. EU의 수입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703호(승용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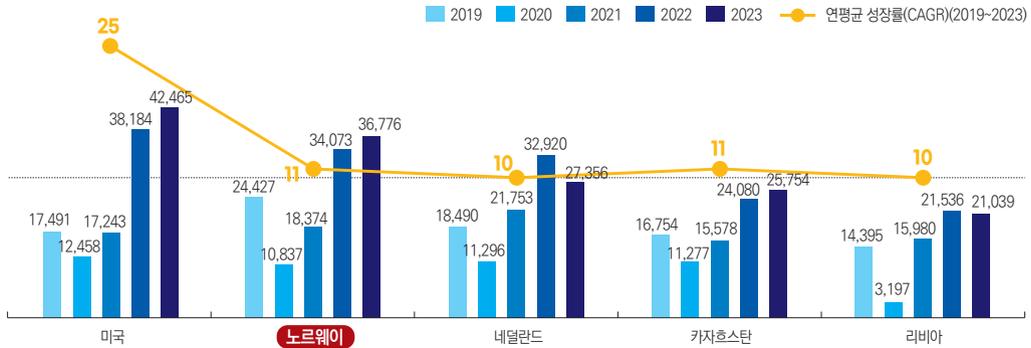
단위: 백만€, %



자료: K-stat

2. HS 2709호(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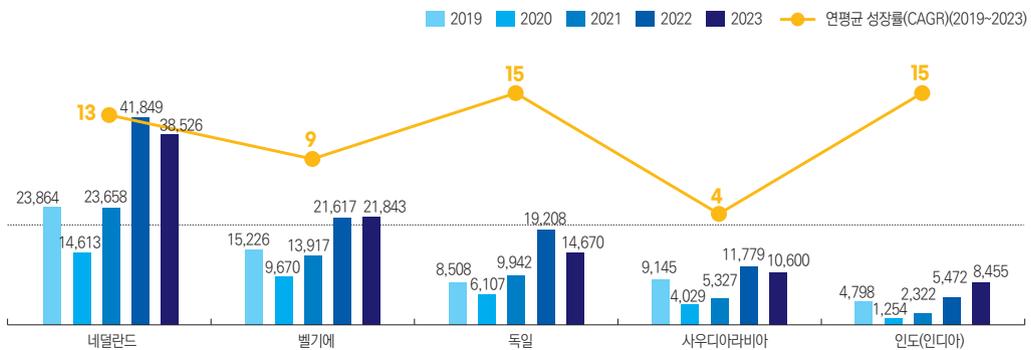
단위: 백만€, %



자료: K-stat

3. HS 2710호(석유조제품)

단위: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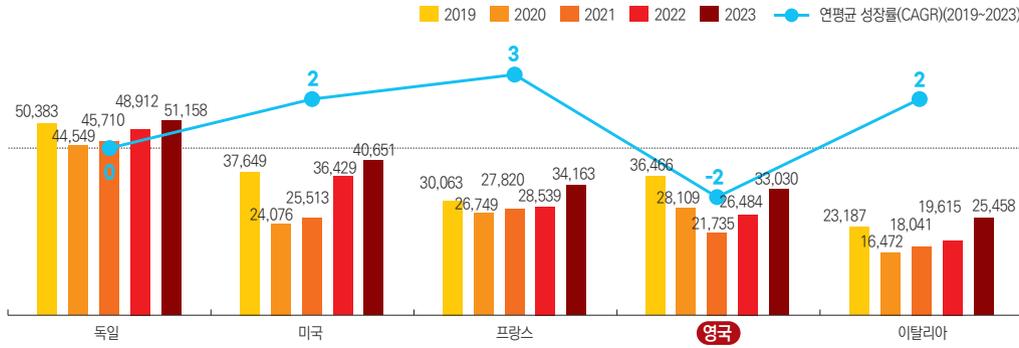
자료: K-stat



3-2. EU의 수출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703호(승용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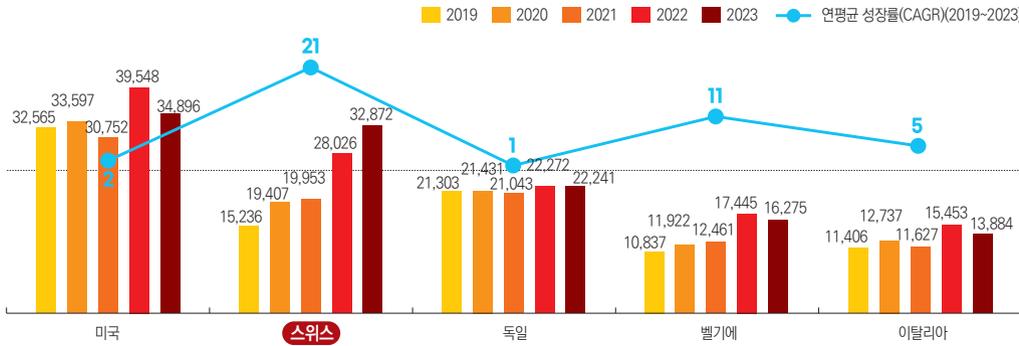
단위 : 백만€, %



자료: K-stat

2. HS 3004호(소매의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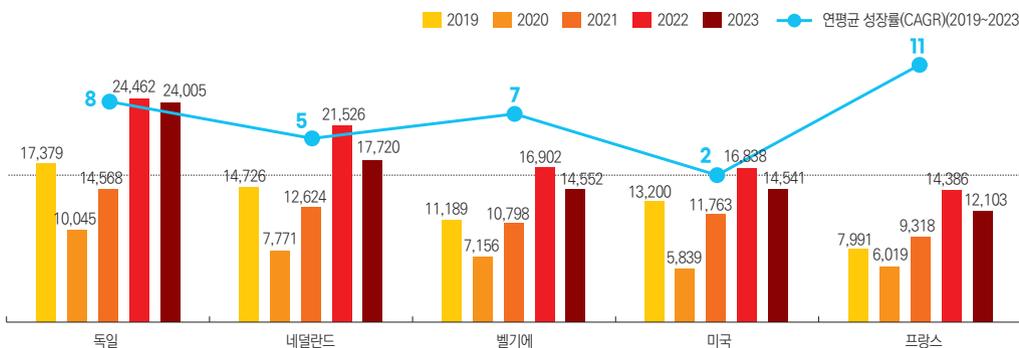
단위 : 백만€, %



자료: K-stat

3. HS 2710호(석유조제품)

단위 :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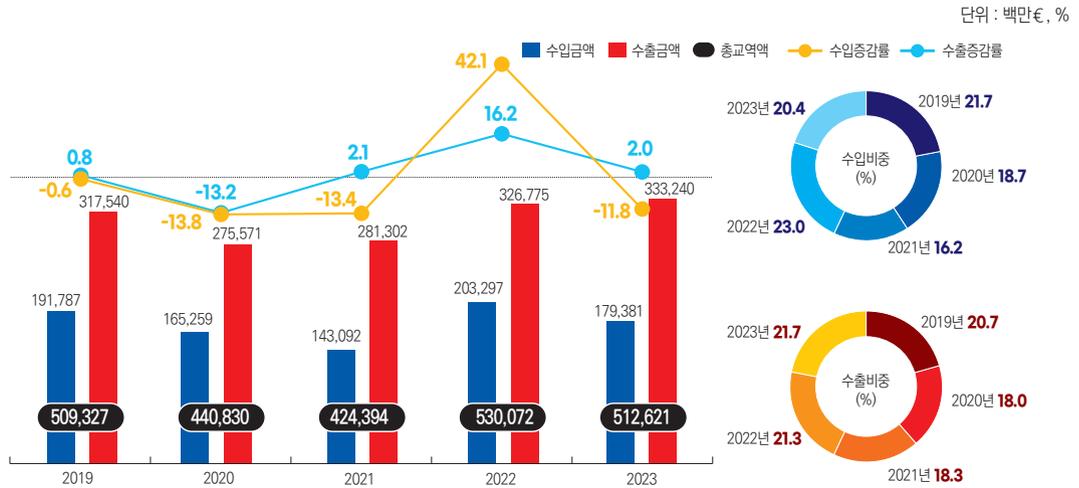


자료: K-stat

4. EU의 주요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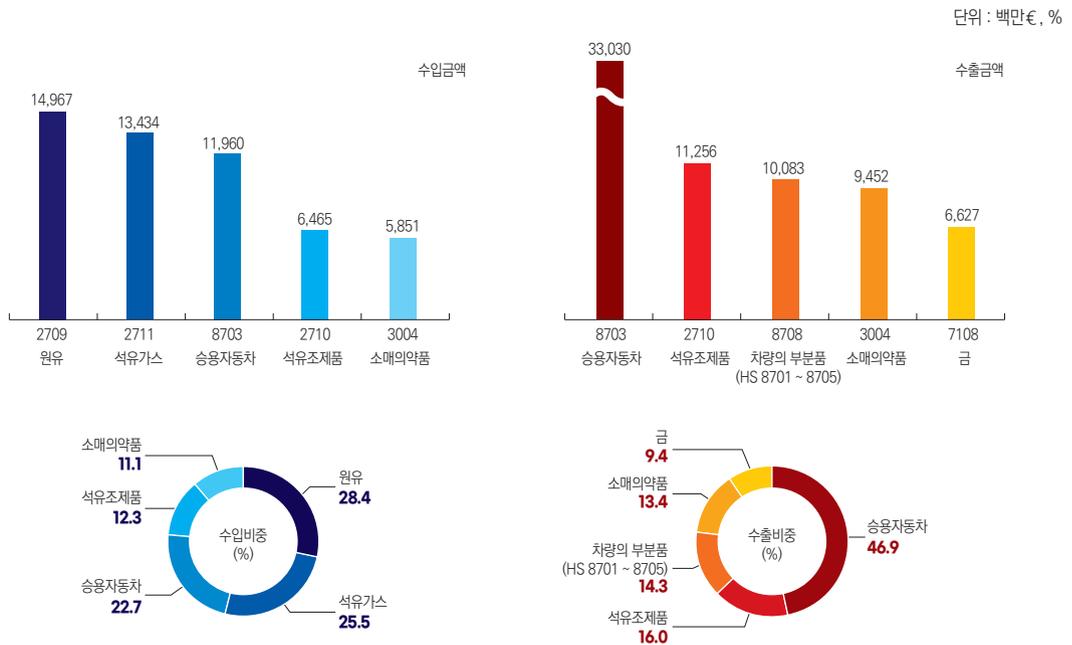
1) EU-영국

EU-영국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EU-영국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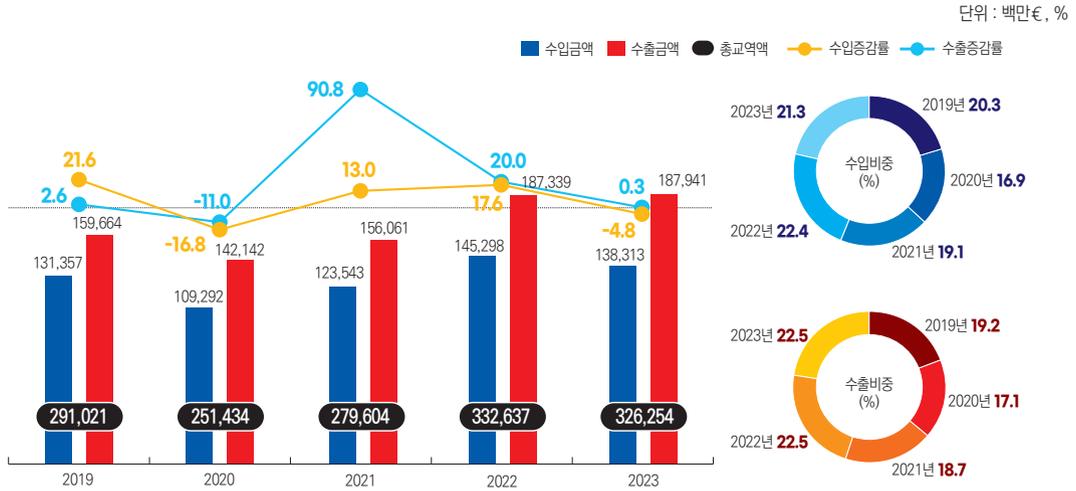


자료: K-stat



2) EU-스위스

EU-스위스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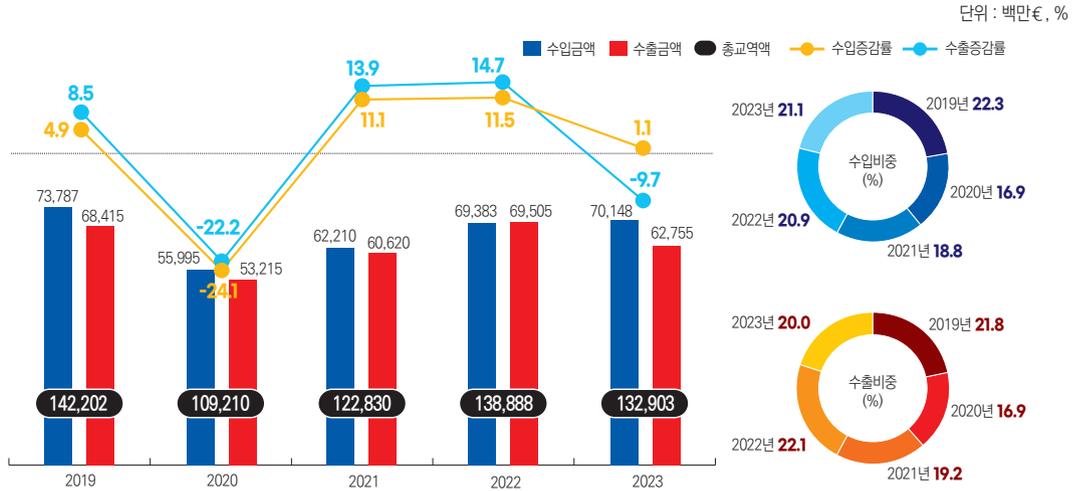
EU-스위스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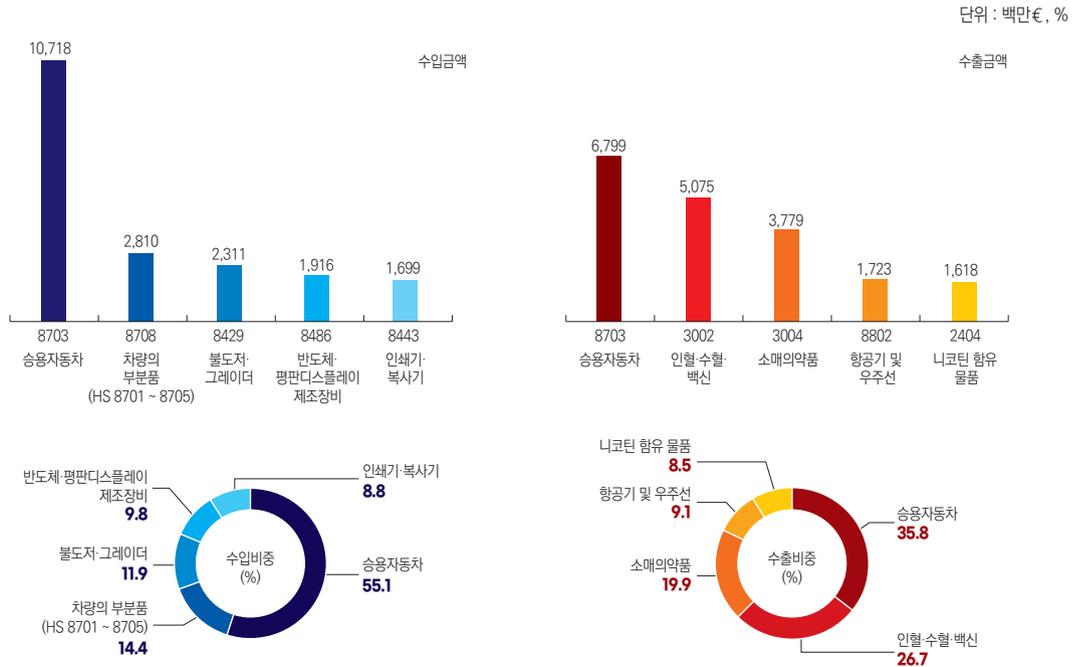
3) EU-일본

EU-일본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EU-일본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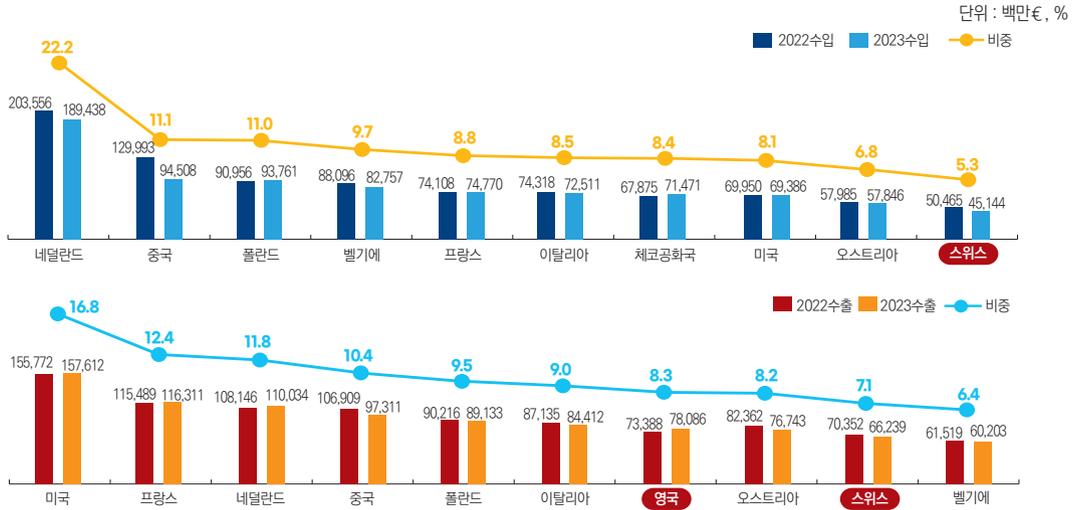


EU 회원국 중 독일과 프랑스의 對세계 교역현황

독일

1. 독일의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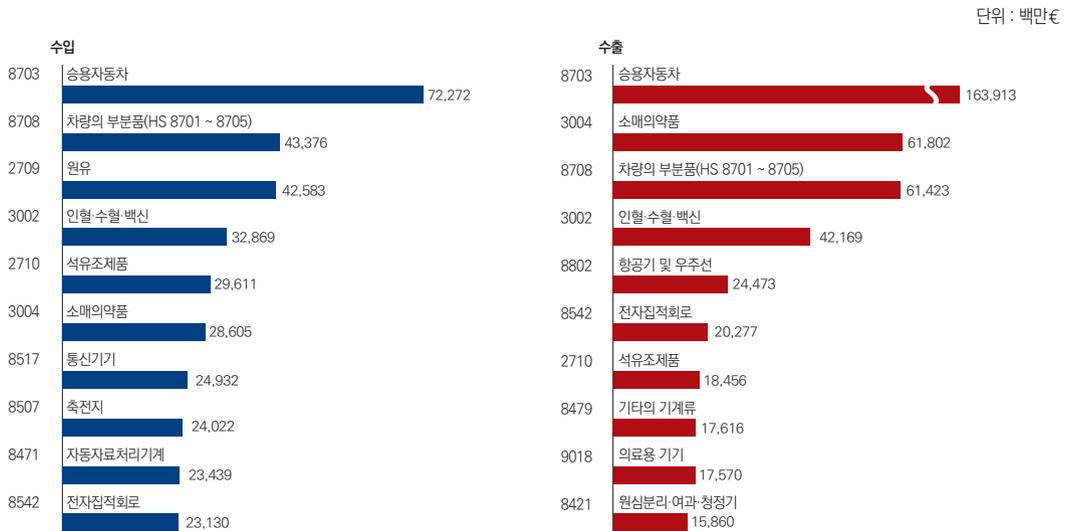
독일의 상위 10대국 수출입 현황



자료: K-stat, 10개국 이하 생략하여 작성 * EU FTA 체결국 빨간색으로 표시

2. 독일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현황(HS 4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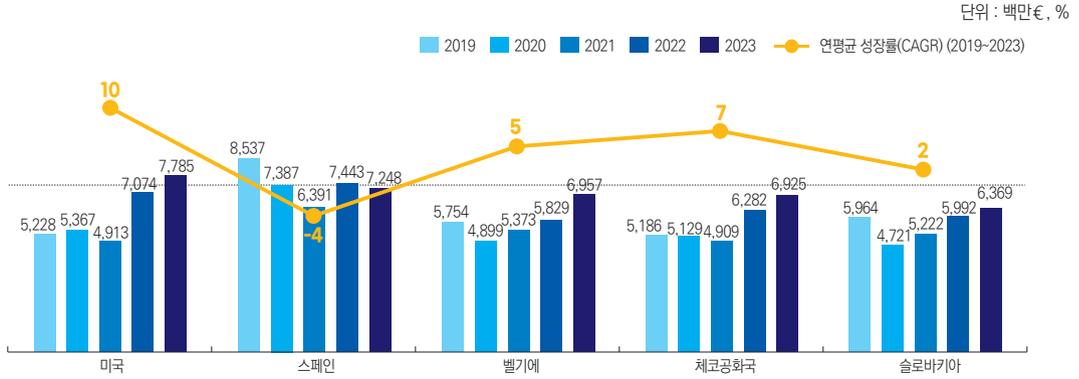
독일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3년 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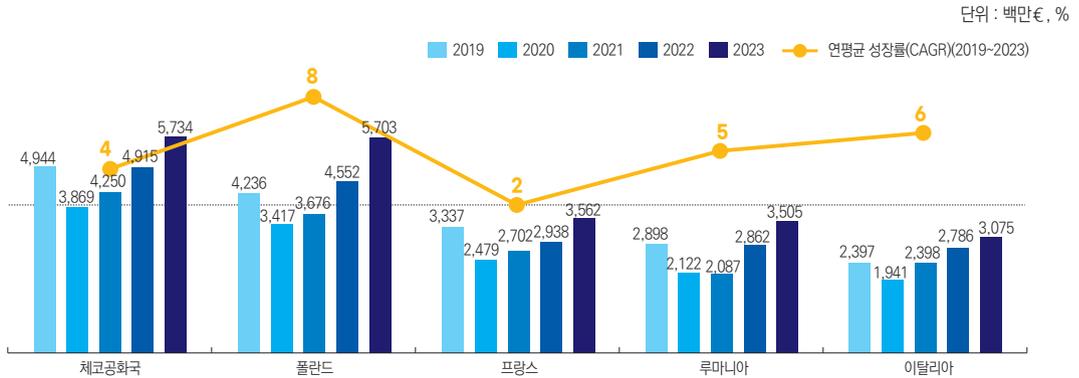
3-1. 독일의 수입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703호(승용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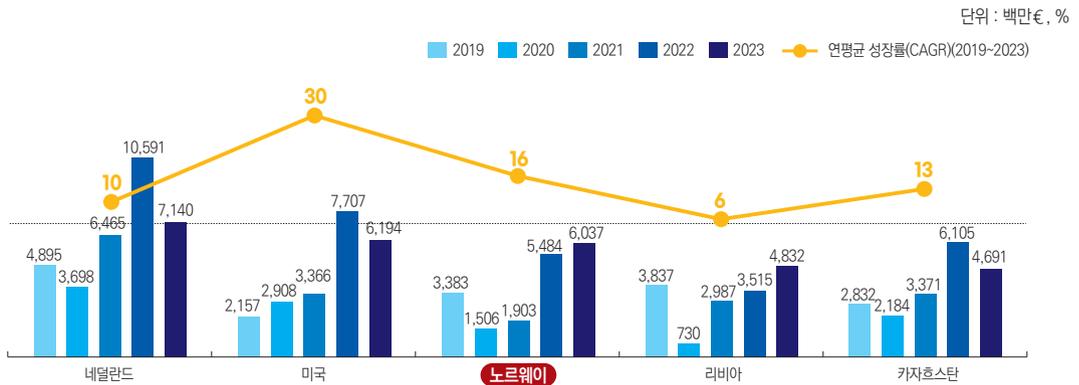
자료: K-stat

2. HS 8708호(차량의 부분품(HS 8701 ~ 8705))



자료: K-stat

3. HS 2709호(원유)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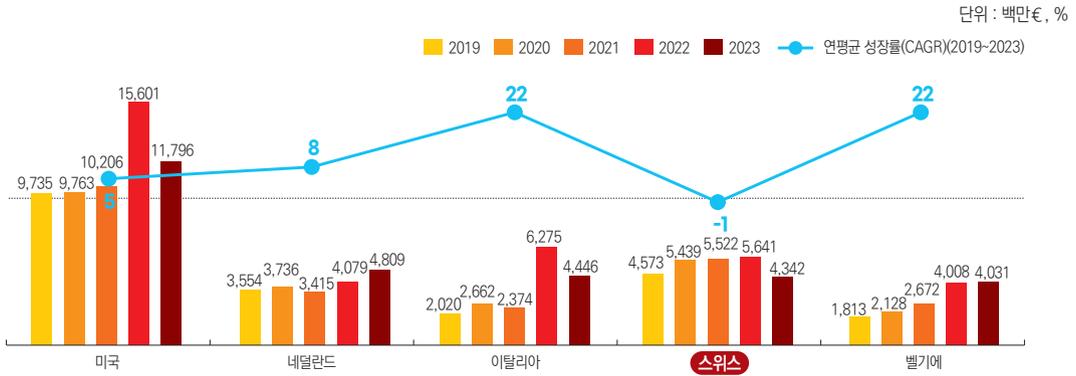
3-2. 독일의 수출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703호(승용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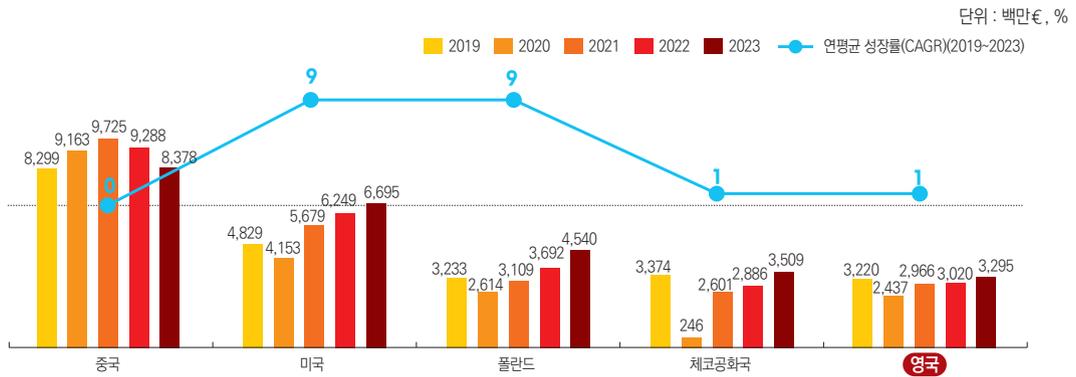
자료: K-stat

2. HS 3004호(소매의약품)



자료: K-stat

3. HS 8708호(차량의 부분품(HS 8701 ~ 8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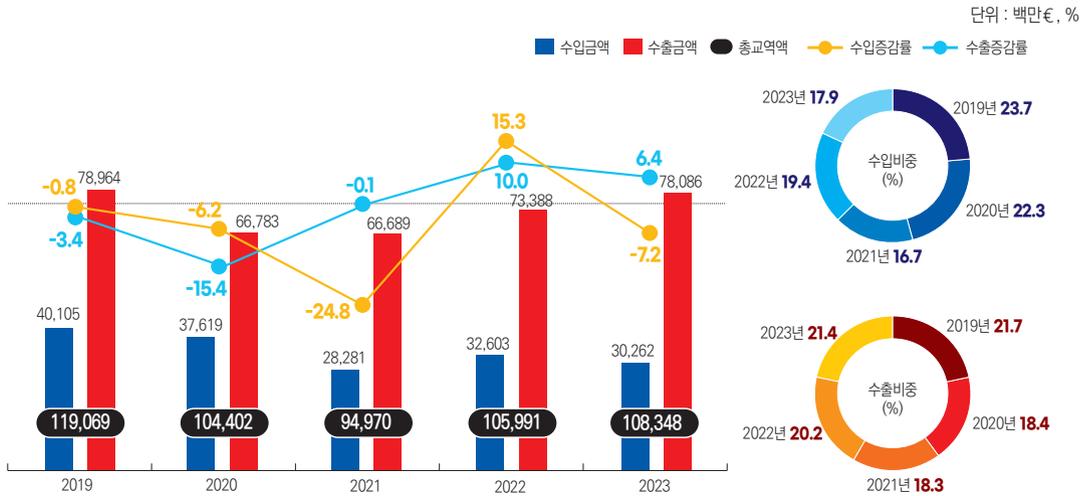


자료: K-stat

4. 독일의 주요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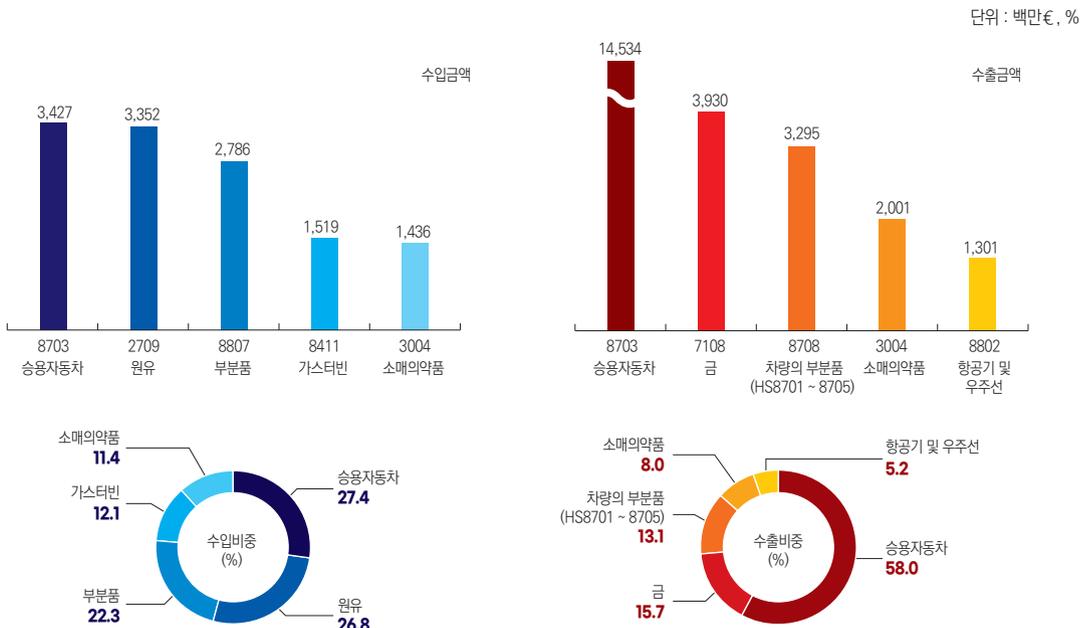
1) 독일-영국

독일-영국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독일-영국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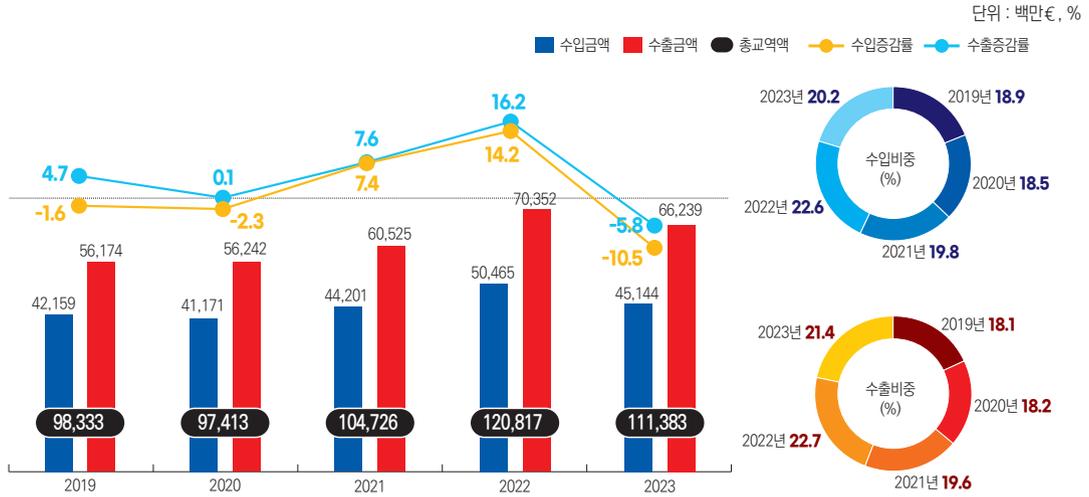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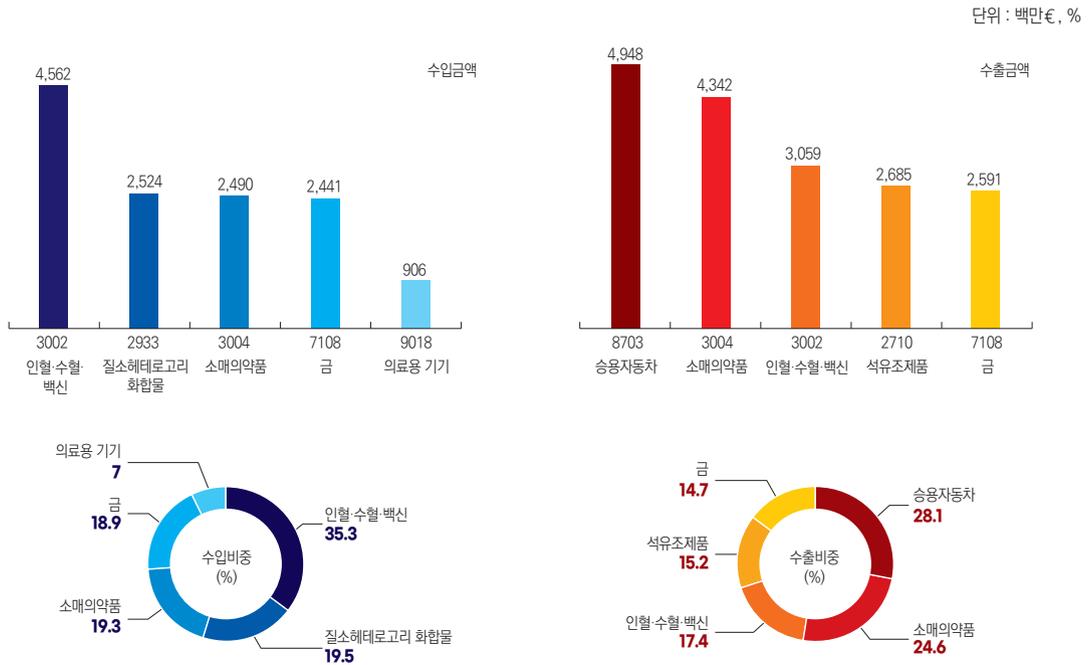
2) 독일-스위스

독일-스위스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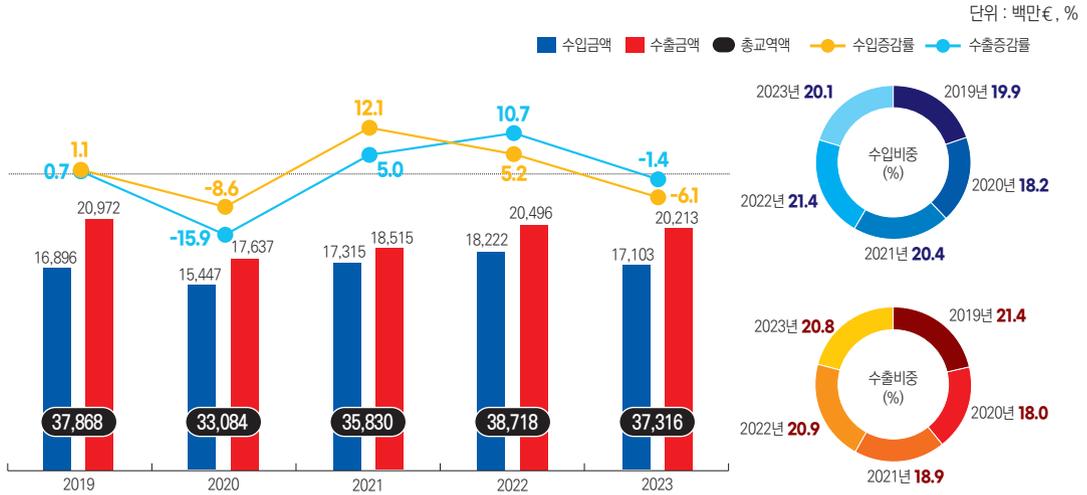
독일-스위스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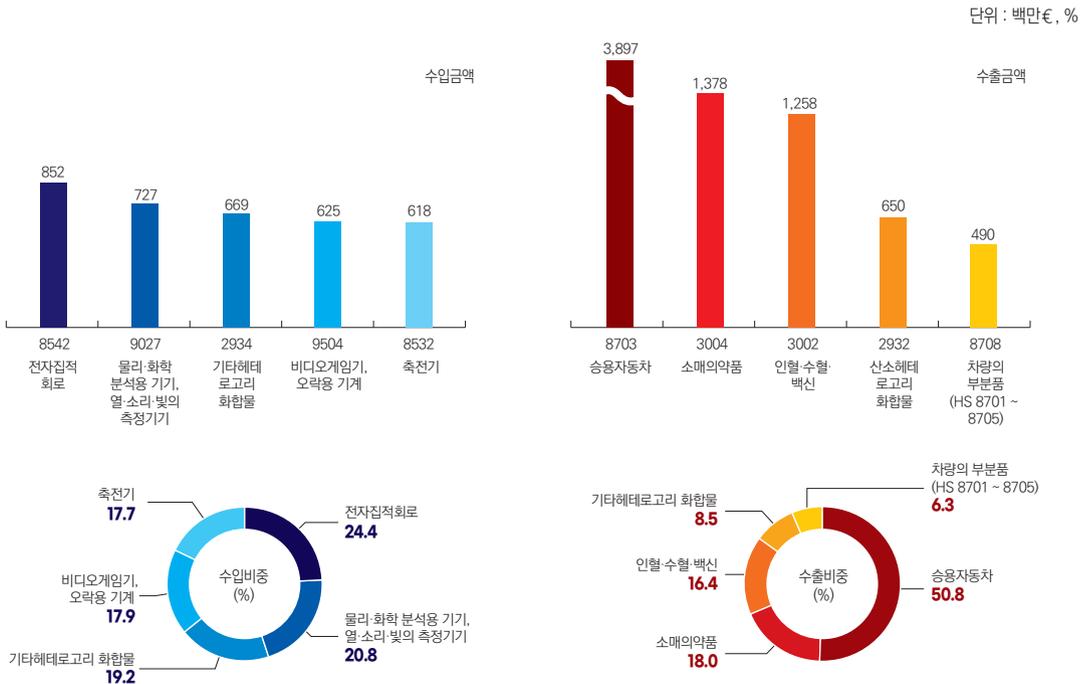
3) 독일-일본

독일-일본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독일-일본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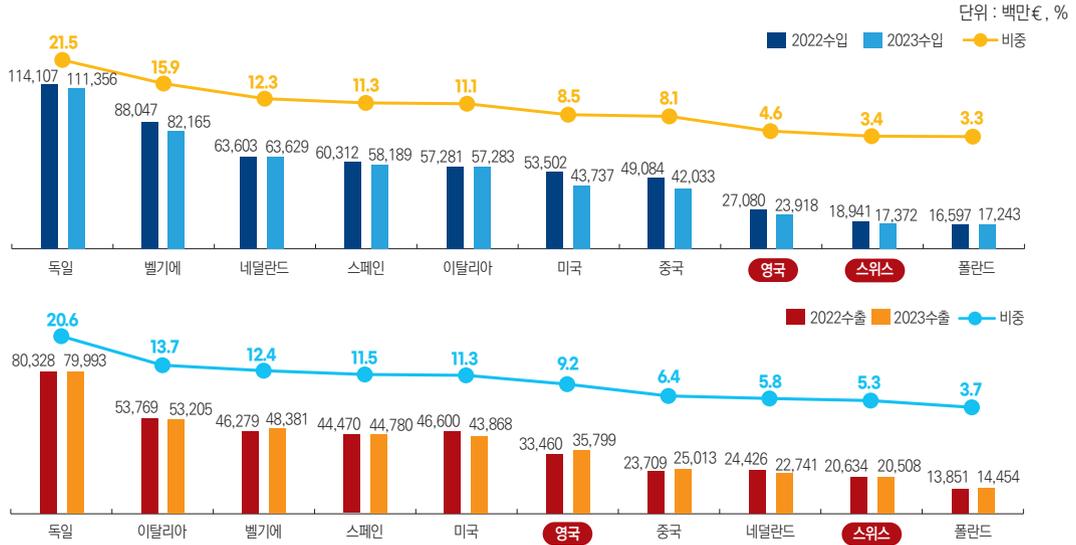
자료: K-stat



프랑스

1. 프랑스의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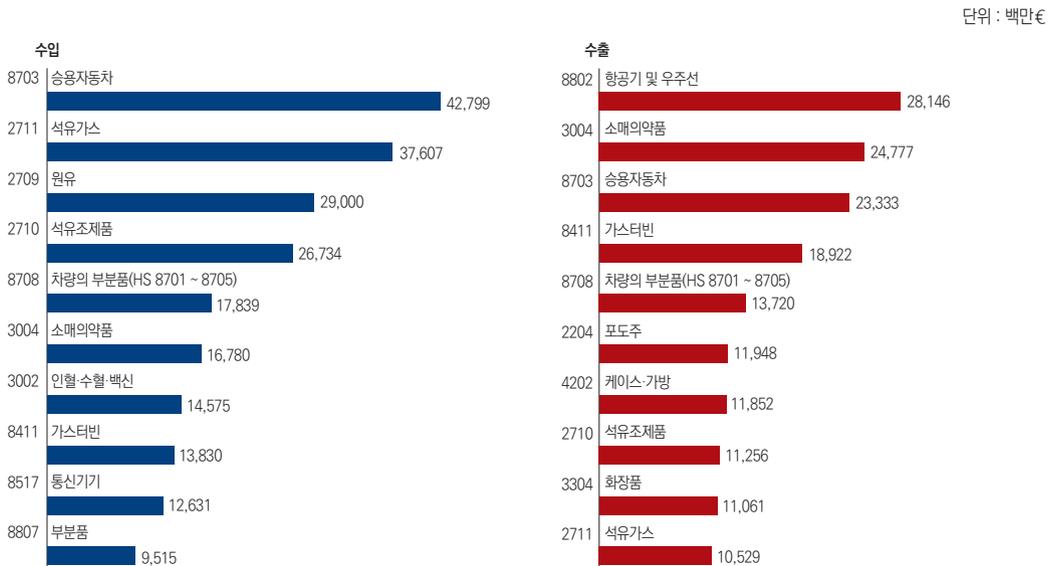
프랑스의 상위 10대국 수출입 현황



자료: K-stat, 10개국 이하 생략하여 작성 * EU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2. 프랑스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현황(HS 4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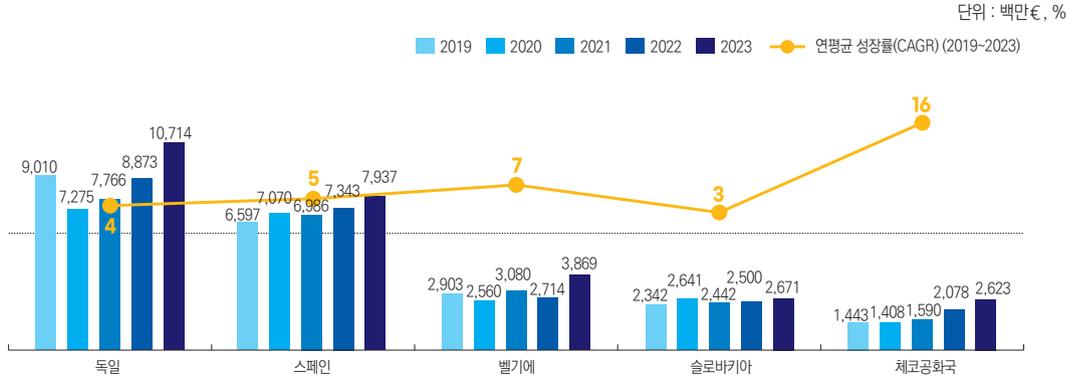
프랑스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3년 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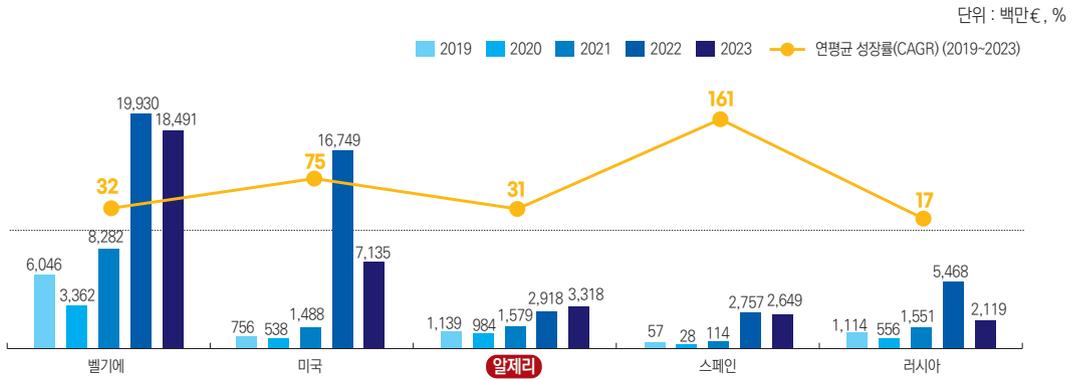
3-1. 프랑스의 수입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703호(승용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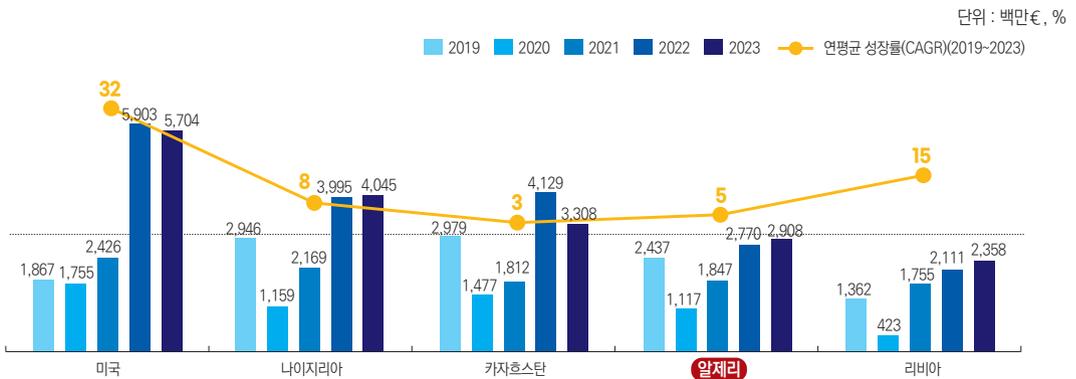
자료: K-stat

2. HS 2711호(석유가스)



자료: K-stat

3. HS 2709호(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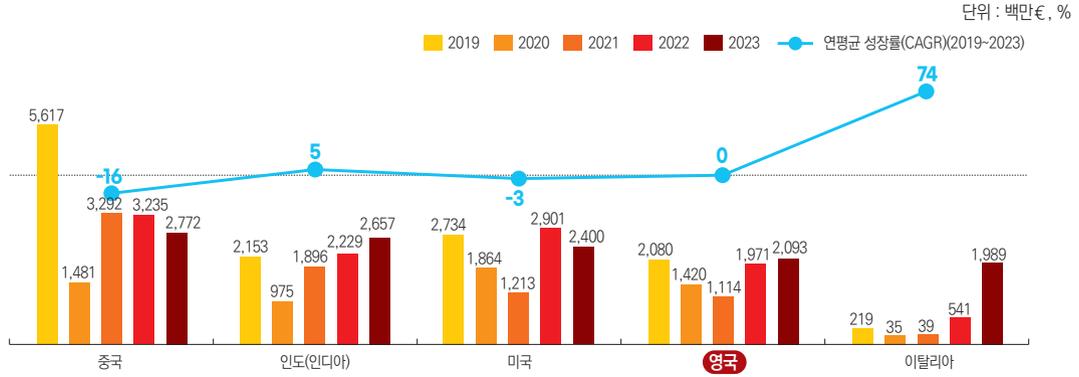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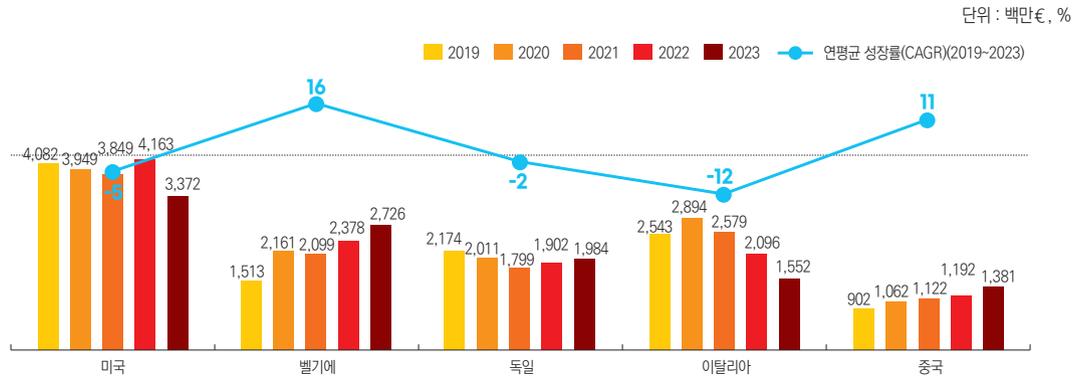
3-2. 프랑스의 수출 상위 3대품목과 교역상대국 현황

1. HS 8802호(항공기 및 우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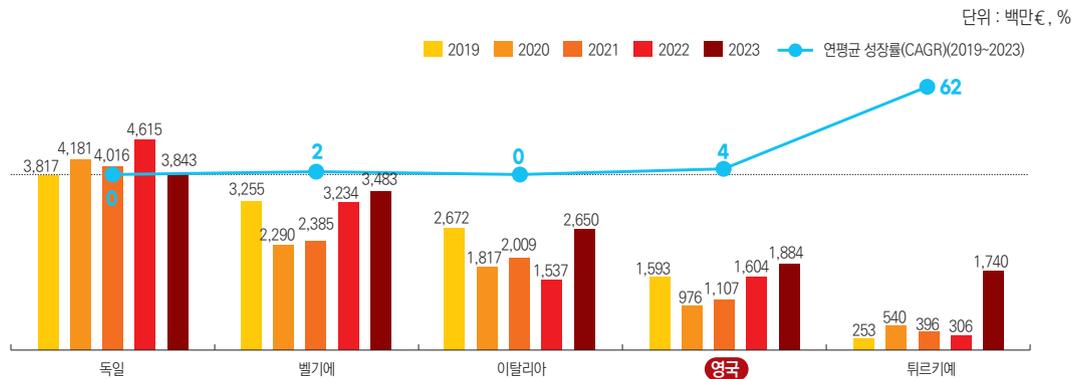
자료: K-stat

2. HS 3004호(소매의약품)



자료: K-stat

3. HS 8703호(승용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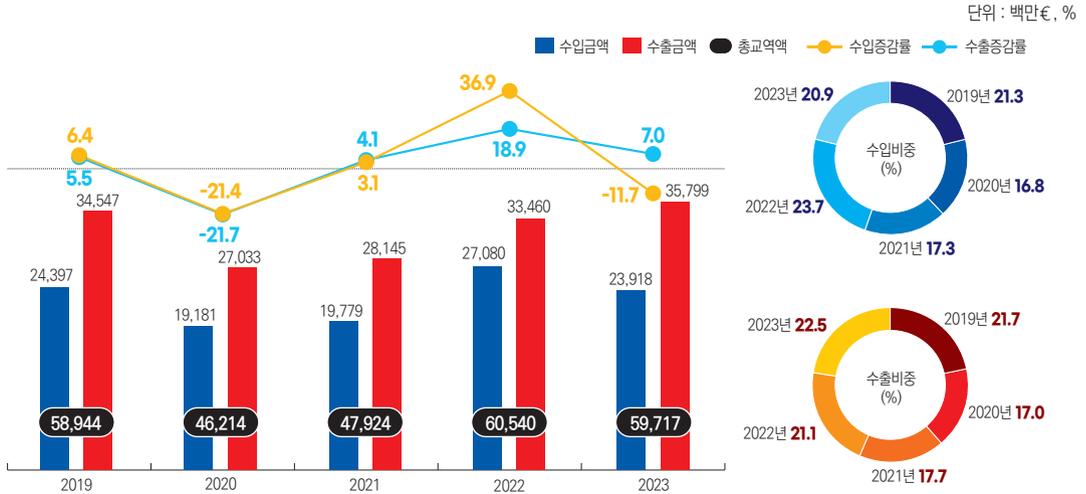


자료: K-stat

4. 프랑스의 주요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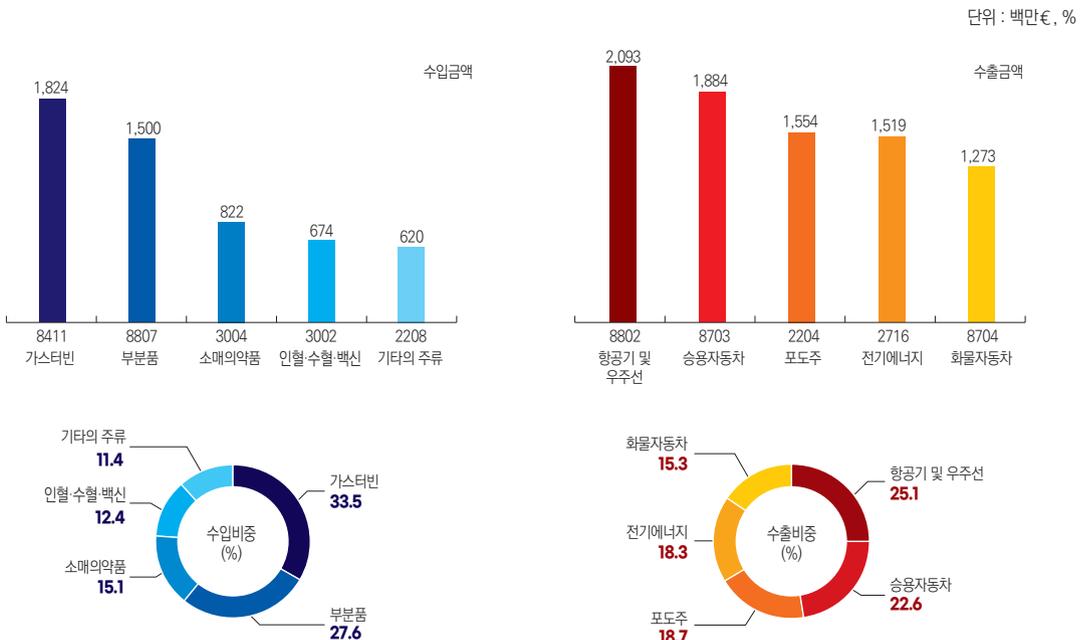
1) 프랑스-영국

프랑스-영국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프랑스-영국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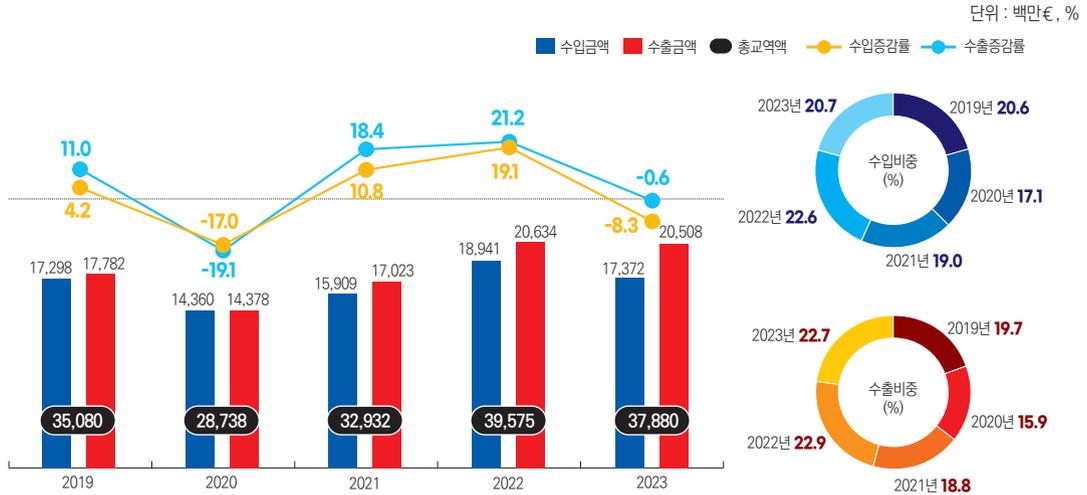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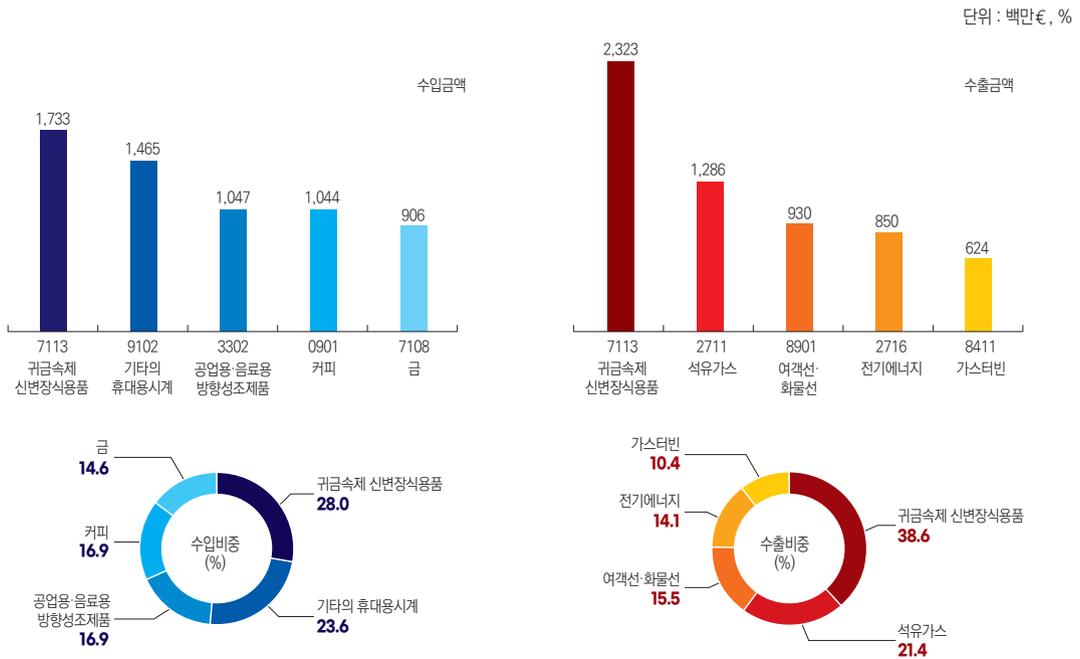
2) 프랑스-스위스

프랑스-스위스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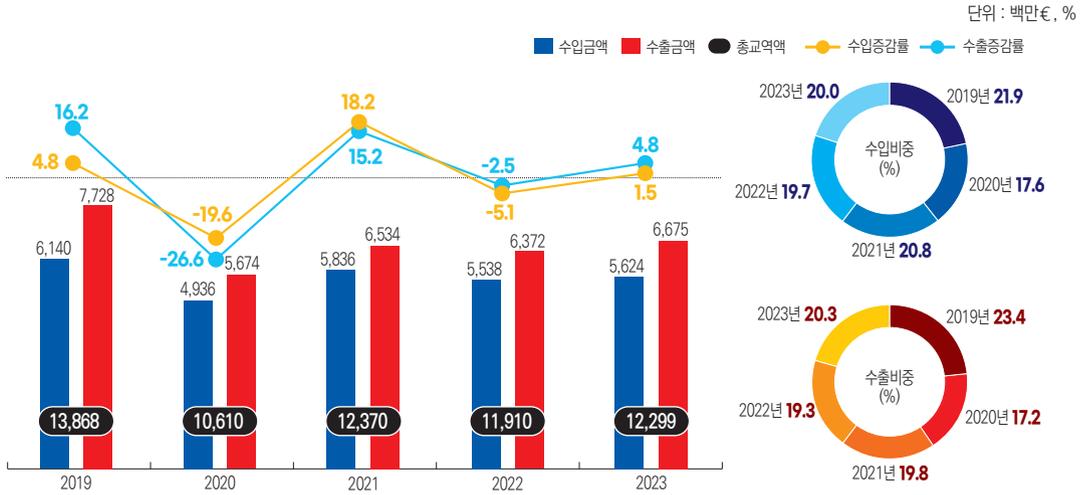
프랑스-스위스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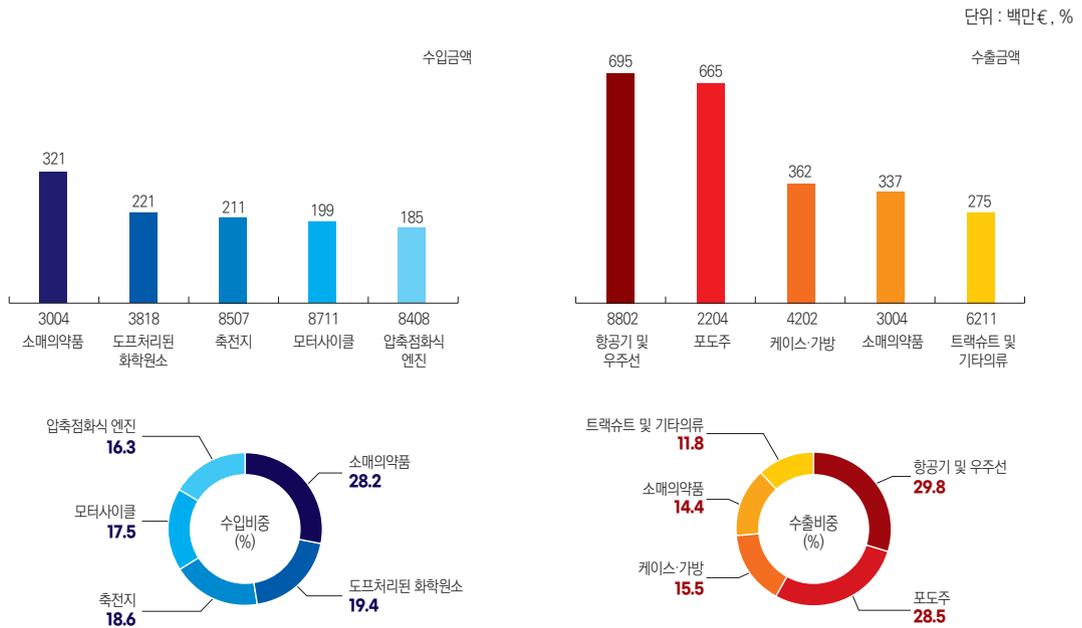
3) 프랑스-일본

프랑스-일본의 최근 5년 교역현황



자료: KITA

프랑스-일본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3년 금액기준)



자료: K-stat